

표지와 동일한 속표지



함께 가는, 즐겁고 행복한 길



한국초등교장협의회
회장 박 덕 수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 초등교육의 전문성과 위상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앞장서 노력하시는 한국초등교장협의회 이사님들과 대의원님
들을 모시고, 2015 상반기 이사·대의원회 개최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바야흐로, 희망찬 생동감으로 가득한 아름다운 봄날입니다.

아이들의 활기찬 몸짓만으로도 학교는 온통 희망의 기운이 가득한데, 지난해 유난히
잎을 일찍 떨군 나무는 다른 나무보다 앞서 열린 색 꽃망울을 터트려 화사한 꽃 세상을
선사했고, 겨울이 다가오도록 잎을 달고 있던 나무는 아직도 잠에서 완전히 깨어나지
못한 모습이지만, 가지마다 초록색 여린 잎과 꽃망울을 달고 있어, 곧 더 진한 색의
꽃이 필 것이 분명하기에 한층 더 기대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은 찬바람이 불고, 혹한이 계속되던 지난겨울에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만
같았지만, 훈훈한 바람이 스치는 곳마다, 따사로운 햇살이 멈추는 곳마다, 생명수를
머금은 빗방울이 적시는 곳마다, 봄기운이 번져가며, 새로운 봄 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루가 다르게 새로이 시작하고, 만개하는 새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보면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학교의 교육도 봄날의 모습처럼 매일매일 더 새로워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적절한 교육을 위해 지금 이 순간, 우리들 교장이
해야 할 일에 대하여 다시금 살펴보게 됩니다.

미래학자들은 우리의 학생들이 성인이 되어 살아갈 미래사회는 각자가 갖춘 능력과
소양을 바탕으로 서로 협력하고, 나누며 살아가는 모습을 최고의 행복으로 인식하게
되는 사회로 예측하고 있으며, 교육학자들은 미래사회에 대비한 교육은 주어진 단순
지식을 습득하고, 암기하며, 오래도록 기억한 결과를 점수화, 등수화하던 과거의 구태
의연한 모습에서 벗어나, 학생마다 갖춘 능력과 소질을 발굴하고, 발휘하도록 하며,
바르며 옳고, 남다른 생각을 존중하며, 서로 소통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태도를 갖추게

하는 교육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미 교장선생님들께서는 학자들의 연구보다 앞서서, 미래사회에 대한 바른 예견을 하셨으며, 학생들이 갖고 있는 소질과 능력을 발굴하고, 발휘하게하기 위한 최선의 교육을 철저히 준비하시고, 추진하고 계셨기에, 우리나라의 초등교육이 세계가 주목하는 성과를 거양하기에 이른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지금도 학교마다의 여건과 환경을 고려한 더 나은 교육을 위해 늘 고심하시며, 교육공동체 모두와 함께 연구하고 계시므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과가 있을 것이 너무나 확실하다 하겠는데, 이는 마치 봄날에 꽃나무마다 풀꽃마다 활짝 드러낸 남다른 모습과 형태로 아름다운 봄날의 향연을 이루는 구성원이 되게 한 큰 기운은 역시 봄햇살과 봄바람과 봄비였던 것처럼 교장선생님들께서는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를 위한 교육 초석을 다지게 하는 중요한 기운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초등교육을 일구신 존경하는 이사·대의원 교장선생님.

부디, 2015학년도 상반기 이사·대의원총회 및 연수회가 교장선생님께서 추구하고 계신 교육을 완성하시는데 꼭 필요한 정보 제공의 기회가 되고, 우리나라 초등교장의 권위를 더욱 신장시킬 수 있는 만족스러운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아울러 교장회 발전을 위한 귀한 의견을 개진하시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끝으로, 바쁜 시간을 할애하시어 이사·대의원총회를 면밀히 준비해 주신 이사님들과 연수회를 진행해 주시는 연수·연구분과 전문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오늘날 학교 현장에서 많은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학교 노무인사 실무의 법령과 실제’를 상세히 안내해 주시고, 향후 학교에서 있을 수 있는 노무 관련 사안에 대하여 적극 자문해 주실 노무법인 ‘위맥’ 함용일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우리나라 교원의 권위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님을 대신하시어, 김종식 사무총장님께서 격려와 귀한 정보를 주심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혼자 가는 길은 어렵고 힘들지만, 함께 가는 길은 즐겁고 행복합니다.
미래 대비 초등교육의 완성을 위한 길이 함께 가는, 즐겁고 행복한 길이기를 기원합니다.

2015년 4월 29일

한국초등교장협의회 회장 박 덕 수

한국초등교장협의회

2015 상반기 이사·대의원회 및 연수회 일정

- 주최·주관 (사) 한국초등교장협의회
- 일 시 2015년 4월29일~30일(수,목)
- 장 소 단양 대명리조트
- 참가 대상 이사 22명, 대의원249명
- 일 정 표

구분	행사명	시간	소요시간	대상	장소	비고
첫 째 날	참가 등록	14:00 ~ 14:30	30분	이사, 대의원, 임원	로비	
	숙소 배정	14:30 ~ 15:00	30분	이사, 대의원, 임원	로비, 숙소	
	이사회	15:00 ~ 18:00	180분	이사	B1층 성문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보고 • 감사보고 • 신임 회장, 부회장, 감사선출
	연수회 1	15:00 ~ 16:40	100분	대의원, 임원	2층 그랜드볼룸	노무인사(위맥)
	휴식	16:40 ~ 17:00	20분	대의원, 임원		
	연수회 2	17:00 ~ 18:00	60분	이사, 대의원, 임원	2층 그랜드볼룸	교육정책(교총)
	석식	18:30 ~ 19:30	60분	이사, 대의원, 임원	2층 그랜드볼룸	
	휴식	19:30 ~ 20:30	60분	이사, 대의원, 임원	숙소	
	시·도연수회	20:30 ~ 22:30	120분	이사, 대의원, 임원	시도 자울	
취침	22:30 ~		이사, 대의원, 임원	숙소		
둘 째 날	조식	07:30 ~ 09:00	90분	이사, 대의원, 임원	대식당	
	대의원회	09:00 ~ 11:00	120분	이사, 대의원, 임원	2층 그랜드볼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보고 • 회장, 부회장, 감사 인준 • MOU 체결
	시·도연수회	11:00 ~ 13:00	120분	시·도별 참가자	문화연수	
	중식	13:00 ~ 14:00	60분	시·도별 참가자	시·도별 예약 식당	
	귀가	14:00		시·도별 참가자		

●●●● 목 차 ●●●●

I. 보고사항

① 2014학년도 주요 업무 추진 결과	3
② 2014학년도 세입·세출 결산	11
③ 2014학년도 감사 보고	15

II. 안건협의

① 2015학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9
② 2015학년도 주요 사업 추진 계획(안)	23
③ 제33대 한국초등교장협의회 임원 선출	25

III. 연수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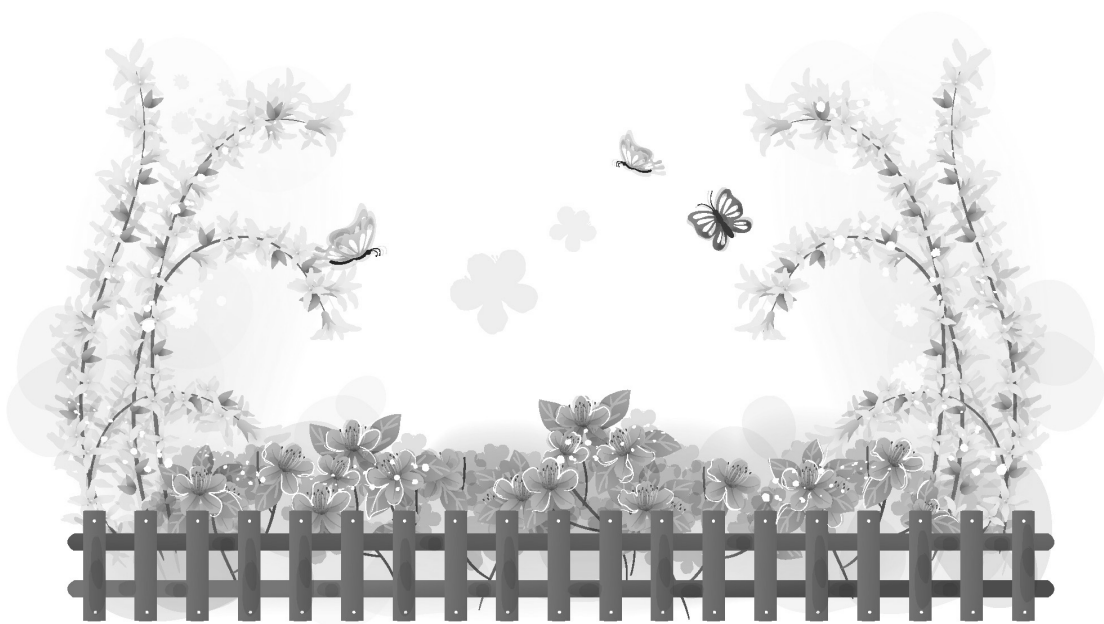
① 교육리더가 알아야 할 인사노무관리 상식	29
- 노무법인 위맥 대표 함용일	
② 한국교총 주요 정책활동	49
- 한국교총 김종식 사무총장	

IV. 첨부자료

① 이사·대의원 명단	71
② 정관	76
③ 회칙	85

1. 보고사항

- ① 2014학년도 주요 업무 추진 결과
- ② 2014학년도 세입·세출 결산
- ③ 2014학년도 감사 보고



1

2014학년도 주요 업무 추진 결과

1. 교원 성과급 지급 방안 개선 위원회 참석

- 일 시 : 2014년 3월5일
- 장 소 : 교육부

2. 한국교총과의 간담회 참석

- 일 시 : 2014년 3월18일
- 장 소 : The-K 서울 호텔

3. 사)한국초중고교장총연합회와 교육부 장관과의 간담회 참석

- 일 시 : 2014년 3월27일
- 장 소 : 서울 정동

4. 2014 제1차 이사회 개최

- 일 시 : 2014년 3월28일
- 장 소 : 서울 설가온
- 참 석 : 이사 20명, 구임원 9명, 교원 정년 환원 추진 위원회 위원장,
정관 개정 특별위원회 위원장, 총31명
- 안 건
 1. 2013년도 임원 해촉식 및 신규임원 상견례
 2. 2014년도 상반기 이사·대의원회 사전 협의
 3. 교원 정년 환원 추진위원회, 정관 개정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

5. 2014 제2차 이사회 개최

- 일 시 : 2014년 5월 12일
- 장 소 : 서울 설가온
- 참 석 : 이사 20명

○ 안 건

1. 2014 상반기 이사·대의원회 개최 : 2014.6.12~13일 개최 협의
2. 2014 하계 연수회 개최 관련 : 2015년 1월 초순에 개최 협의

6. 2014 상반기 이사·대의원회 및 연수회 개최

- 일 시 : 2014년 6월 12일
- 장 소 : 호텔 인터볼고 원주
- 참석대상 : 이사 20명, 대의원 261명
- 주요 행사 내용

■ 회 의

1. 2013년도 사업 결산
2. 2014년도 사업 계획
 - 2014년도 제56회 연수회는 세월호 참사로 동계로 연기
 - 동계연수회 공식 명칭에 ‘총회’ 넣어 전국 회원 행사임을 강조
3. 임원보선
 - 부회장(최종오 전남회장, 김병엽 부산회장), 감사(김성림 제주회장)
4. 정관개정 특별위원회 발의
 - 경기도 이사 1명 증원, 회장은 선거중립의무를 지키기로 함

■ 연 수

1. 마음의 근육 키우기를 통한 행복 교육 (이승원 한국리더십센터 교수)
2. 초등 진로교육,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서우석 경인교대 교수)
3. 어린이 안전사고 유형과 예방법 (허억 어린이안전학교 대표)

7. 어린이안전학교 ‘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교육 강화’ 업무협약

- 일 시 : 2014년 6월 12일
- 장 소 : 호텔 인터볼고 원주
- 내 용
 - 초등학교 안전교육 자료 및 교육강사 제공
 - 전국 권역별 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
 - 학생 안전교육 및 교원 연수 자료 개발·제공
 - 교장회 산하 ‘초등학교안전교육지원위원회’조직·운영

8. 안전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활동 안내 자료 파일 배포

- 일 시 : 2014년 7월 4일
- 내 용
 1. 초등학교 통학로 위험 실태조사 실시
 2. 안전교육 이수 방학과제 부여
 3. 교사들의 안전지도 역량 강화 사업 지원

9. 교육감 직선제 헌법소원 참여 안내 자료 배포

- 일 시 : 2014년 7월 29일
- 내 용
 1. 교육감 직선제 위헌성 설명
 2. 헌법 소원 참여 방법 안내

10. 시·도 초등교장회 활동 보조비 지급

- 일 시 : 2014년 8월 29일
- 내 용 (※지급액 산정 : 회원 수×3,000원)

순	시·도	회원수	지급액	비고	순	시·도	회원수	지급액	비고
1	서울	597	1,791,000		9	강원	351	1,053,000	
2	세종	25	75,000		10	경기	500	1,500,000	
3	광주	146	438,000		11	경남	489	1,467,000	
4	대구	219	657,000		12	경북	420	1,260,000	
5	대전	143	429,000		13	전남	423	1,269,000	
6	부산	302	906,000		14	전북	400	1,200,000	
7	인천	238	714,000		15	제주	110	330,000	
8	울산	120	360,000		16	충남	405	1,215,000	
.	17	충북	255	765,000	
소계			5,370,000		소계			10,059,000	
합계					15,429,000				

11. 2014 제3차 이사회 개최

- 일 시 : 2014년 9월 22일
- 장 소 : 서울 설가온
- 참 석 : 이사 20명
- 안 건
 1. 회장 선임 : 박덕수 수석부회장을 신임회장으로 지명 결의함
 2. 하반기 이사·대의원회 개최지 선정 : 충남 부여 롯데 리조트
 3. 하반기 이사·대의원회 워크숍 운영 계획(안) 협의
기존의 강의식 연수가 아닌 토론 과정이 포함 된 워크숍 형태의 연수를 실시하기로 결의함
 4. 차기 이사회 안건 협의

12. 연구·연수 전문위원회 개최

- 일 시 : 2014년 10월 2일
- 장 소 : 서울 도원
- 참 석 : 회장, 전문위원 3명, 사무국장
- 내 용
하반기 이사·대의원회 연수 운영 계획 수립 및 사전 준비사항 점검

13. 사)한국초중고교장총연합회 이사회 참가

- 일 시 : 2014년 10월 7일
- 장 소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참 석 : 회장
- 내 용
박덕수 한초협 회장, 초중고등학교총연합회 회장 선임

14. 교육부장관과의 간담회

- 일 시 : 2014년 10월 7일
- 장 소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참 석 : 회장
- 내 용
초등교육발전을 위한 방안 및 미래대비 초등교육 프로젝트 설명

15. 제5회 독도의 날 기념식 참석 및 후원 명칭 사용 승인

- 일 시 : 2014년 10월 24일
- 장 소 : 서울교육대학교 종합 문화관

16. 제56회 한국초등교장협의회 총회 및 동계연수회 준비위원회 개최

- 일 시 : 2014년 11월 21일
- 장 소 : 인천 도화초등학교 교장실, 남동체육관
- 참 석 : 회장, 부회장, 대변인, 인천초등교장회 임원
- 내 용
 - 행사장 답사, 준비 진행 상황 점검, 업무 분장 협의

17. 2014 하반기 이사·대의원회 및 연수회

- 일 시 : 2014년12월 1일~2일
- 장 소 : 충남 부여 롯데 리조트
- 참석대상 : 이사 및 대의원 278명 (회장단, 시·도 대표, 시·군·구 대표)
- 주요 행사 내용

■ 회 의

1. 회칙개정 : 2014상반기 이사대의원회에서 경기도 이사 1명 증원 (회칙 제 14조 2항)

2. 이사는 회장, 부회장, 각 시·도 회장으로 한다(단, 경기도는 이사2명)

2. 이사회 이사 위촉 - 경기이사1명 증원(이남봉 탐동초교장),
- 부회장(한상운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구기획 부장)
3. 2016 제58회 하계연수 및 총회 개최지 선정
4. 2015 한초협 주요 업무추진 계획
5. 제57회 동계연수 협조사항

■ 연 수

- : 토크콘서트 ‘미래사회, 미래교육, 미래학교 학교의 진화를 준비한다’
- 학교 사회의 진화와 세상을 바꾸는 10가지 직업
(조훈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겸임교수)
 - 세계 초등교육을 이끄는 초등학교 문화를 위해
(송경헌 교육학 박사)

18. 2015학년도 학사일정(안) 배포

- 일 시 : 2014년 12월 5일
- 내 용
 - 연간 수업일수 195일
 - 4가지 유형 안내
 - 가) 월별 단기방학형
 - 나) 봄, 가을 단기방학형
 - 다) 2월 등교 최소형
 - 라) 혼합형 A, B

19. 제56회 한국초등교장협의회 총회 및 동계연수회 및 시·도 슬로건 공모

- 일 시 : 2014년 12월 16일
- 내 용 : 동계 연수 행사장에 설치할 시·도 초등교장회 슬로건 문안

20. 제56회 한국초등교장협의회 총회 및 동계연수회 운영비 지원

- 일 시 : 2014년 12월 18일
- 지원액 : 3,500만원
- 지원방법 : 인천초등교장회 계좌로 송금

21. 싸이버 안전교육 인증사업 안내

- 일 시 : 2014년 12월 18일
- 주 최 : 한국초등교장협의회, 어린이안전학교
- 대 상 : 전국 초등학교 학생과 학부모
- 내 용 : 부모님과 함께하는 cyber 안전교육 인증사업

22. 제56회 한국초등교장협의회 총회 및 동계연수회 대표 슬로건 공모

- 일 시 : 2014년 12월 19일
- 내 용 : '제56회 한국초등교장협의회 동계연수회' 슬로건 공모(대표 주제)

23. 사)한국초중고등학교장총연합회 정기총회 및 연수회 참석

- 일 시 : 2014.12.22.(월)~12.23(화)
- 장 소 : 양평 대명 리조트
- 대 상 : 한교련 대의원

24. 제56회 한국초등교장협의회 총회 및 동계연수회 준비위원회 개최

- 일 시 : 2014년 12월 26일
- 장 소 : 서울 설가온
- 참 석 : 회장, 부회장, 대변인, 사무국장
- 안 건 : 슬로건 채택, 대주제 선정, 결의문 작성, 준비 진행 상황 점검

25. 제56회 한국초등교장협의회 총회 및 동계연수회 슬로건 채택 및 시상

- 일 시 : 2014년 12월 29일
- 내 용 : 채택 - 변화하는 초등교육, 행복한 대한민국
우수작 - 전북, 전남, 대구, 강원
- 우수작 상금 시상 : 300,000원
- 방 법 : 해당 시·도 교장회 계좌로 이체
- 기 한 : 2014년 12월 31일

26. 연구·연수전문위원회 개최

- 일 시 : 2015년 1월 5일
- 참 석 : 회장, 부회장, 대변인, 사무국장
- 안 건 : 교육부 장관에게 질문하는 사전 질문서 작성

27. 제56회 한국초등교장협의회 총회 및 동계연수회 준비 회의

- 일 시 : 2015년 1월 6일
- 장 소 : 인천 소래초등학교
- 참 석 : 회장, 인천 회장, 인천 사무총장, 대변인, 사무국장
- 안 건 : 동계 연수 행사 진행 상황 최종 점검

28. 제56회 한국초등교장협의회 총회 및 동계연수회 개최

- 기 간 : 2015년 1월 13일(화) ~ 2015년 1월 14일(수) (1박2일간)
- 장 소 : 송도 라마다호텔(13일), 남동체육관 內 체조경기장(14일)
- 참 석 : 전체 회원 (전국 초등학교장 및 교장출신 교육전문직, 약6천명)
- 주 최 : (사)한국초등교장협의회

○ 주 관 : 인천초등교장회

○ 일 정

■ 1월13일

- 연수1 : 우수학교 탐방(인천 소재 12개교)
- 연수2 : 전문성신장 특강(한명기 명지대 교수)

■ 1월14일

- 문화공연 : 락음 국악단
- 연수3 : 황우여 교육부장관 특강
- 개회식 : 한국초등교장협의회 회장, 인천교육감, 인천시장, 한국교총회장 등 교육계 내외빈 참석
- 결의문 채택 : 변화하는 초등교육, 행복한 대한민국
- 연수4 : 우수학교 탐방(인천 소재 12개교)

29. 2015 한국초등교장협의회 이사 선임 관련 협조사항 안내

○ 일 시 : 2015년 1월 27일

○ 내 용 :

- 1) 2014 각 시도 교장회 회장(현)의 2015 회장 연임
단) 2014년 2월말, 8월말 퇴임의 경우 제외
- 2) 위 1)항 제외사항에 따른 2015 신임회장 선임 시 자격
 - 2015. 4월부터 정년 2년 이상(2017.5월 이후 정년퇴임)인 자로 한함

30. 2014 한국초등교장협의회 이사 해촉식 개최

○ 일 시 : 2015.2.27

○ 장 소 : 서울 설가온

○ 대 상 : 2014학년도 이사, 퇴임이사

○ 내 용 :

- 1) 2014학년도 사업 결산 보고
- 2) 기타 업무 협의
- 3) 퇴임 및 임기만료 이사 감사패 수여

2 2014학년도 세입 · 세출 결산

가. 2014 세입/세출 총괄

구분	과목	결산액	비고
세입	이월금	44,022,234	
	정기회비	169,290,000	
	보조금	3,300,000	
	잡수입	5,087,816	
	합계	221,700,050	
세출	사업비	144,215,130	
	회의비	11,704,200	
	기관운영비	44,460,403	
	합계	200,379,733	
잔액	세입총액 - 세출총액	21,320,317	2015학년도 회계 이월
기타비 유동자산	사무실임차보증금	10,000,000	

나. 2014 세입 결산

관	항	목	결산액	비고
1.이월금			44,022,234	
2.정기회비			169,290,000	5,643명x30,000원
		시도	결산액	회원수
		서울	17,910,000	597
		부산	9,060,000	302
		대구	6,570,000	219
		인천	7,140,000	238
		광주	4,380,000	146
		대전	4,290,000	143
		울산	3,600,000	120
		경기	30,000,000	1,000
		강원	10,530,000	351
		충북	7,650,000	255
		충남	12,150,000	405
		전북	12,000,000	400
		전남	12,690,000	423
		경북	12,600,000	420
		경남	14,670,000	489
		제주	3,300,000	110
		세종	750,000	25
3.보조금			3,300,000	
		1. 충남지원비	300,000	단체기 제작 지원금
		2. 초중고등학교교장 총연합회	3,000,000	
4.잡수입			5,087,816	
		1.예금이자	87,816	
		2.광고비	5,000,000	56회 동계연수 2건
세입합계			221,700,050	

다. 2014 세출 결산

한국초등교장협의회

관	항	목	결산액	비고
사업비			144,215,130	
	1.	하계연수비	47,386,270	
		가. 총괄운영비	35,000,000	인천초등교장회 운영 지원금
		나. 연수지발간비	11,000,000	인쇄비(4500부)950만원, 교정비150만원
		다. 기타경비	1,386,270	사무국직원, 임원 숙식비, 교통비 등
	2.	대의원연수비	60,829,400	
		가. 상반기	25,741,900	인터불고 숙식비17,116,000원(202명), 시도경비262만원, 중식비202만원, 강사료210만원(3인), 자료제작등 기타경비1,885,900원
		나. 하반기	35,087,500	롯데부여 숙식비25,451,500원(230명), 시도경비255만원, 중식비210만원, 강사료 120만원(2인), 안전교육책제작240만원, 자료제작등 기타경비1,386,000
	3.	전문위원회활동비	552,000	연구연수위원회 회의비
	4.	초등교육정책개발비	2,115,000	안전교육책자제작 수당, 동계연수공모사례금
	5.	홍보비	602,960	도메인기간연장비102,960원, 주간교육광고50만원
	6.	시도교장회활동지원비	16,929,000	5,643명x3,000원
	7.	초중고교장총연합회비	13,000,000	
	8.	유관기관협조유지비	2,800,500	교육 기관 축하 화환 및 난, 감사패
	9.	대외활동비	0	
회의비			11,704,200	
	8.	이사회비	8,791,200	
		가. 1차 회의	4,150,000	회의수당310만원(31명), 식대105만원
		나. 2차 회의	2,790,000	회의수당210만원(21명), 식대69만원
		라. 3차 회의	1,851,200	회의수당10만원x14명, 식대 45만원, 주차 1200
	9.	임시회의비	2,913,000	
		가. 임시 회의	2,530,000	회의수당190만원(19명), 식대63만원
		나. 동계 연수 준비	383,000	회의수당30만원(3인), 식대83,000원
기관운영비			44,460,403	
	1.	인건비	22,808,390	1,915,000원x3회, 1,984,000x9회
	2.	직책수당	9,000,000	회장수당50만원x12회, 국장수당25만원x12회
	3.	복리후생비	944,030	의료보험료 8회
	4.	퇴직적립금	2,380,800	198,400x12회
	5.	여비	651,500	
	6.	업무추진비	518,150	사무국업무회의, 연하장 등
	7.	수용비	818,880	응접용테이블의자49만원 외 소모품, 수수료 등
	8.	통신비	55,610	우편발송료, 택배발송 등
	9.	사무실관리비	6,562,543	임대료, 공과금, 전기세
	10.	잡비	720,500	퇴임기념품8개
세출합계			200,379,733	

라. 예산 대비 세입/세출 항목별 내역

1. 예산대비 세입/세출 총괄

구분	2014년 예산	2014년 결산	비고
세입	247,502,234	221,700,050	
세출	220,336,800	200,379,733	
계	27,165,434	21,320,317	잔액

2. 예산 대비 세입/세출 항목별 가감표

가. 세입 항목별 내역

관항목	2014년 예산액	결산금액	예산대비 가감액
전기이월금	44,022,234	44,022,234	0
정기회비	177,480,000	169,290,000	- 8,190,000
보조금	6,000,000	3,300,000	- 2,700,000
잡수입	20,000,000	5,087,816	- 14,912,184
세입합계	247,502,234	221,700,050	- 25,802,184

나. 세출 항목별내역

관	항목	2014년 예산액	결산금액	예산대비 가감액
사업비	1.하계연수비	52,000,000	47,386,270	4,613,730
	2.대의원연수비	54,200,000	60,829,400	- 6,629,400
	3.전문위원회활동비	3,000,000	552,000	2,448,000
	4.정책개발비	3,000,000	2,115,000	885,000
	5.홍보비	3,000,000	602,960	2,397,040
	6.시도교장회활동지원비	17,748,000	16,929,000	819,000
	7.초중고교장총연합회비	13,000,000	13,000,000	-
	8.유관기관협조유지비	3,000,000	2,800,500	199,500
	9.대외활동비	3,600,000		3,600,000
	소계	152,548,000	144,215,130	8,332,870
회의비	1.이사회비	6,000,000	8,791,200	- 2,791,200
	2.임시회의비	2,000,000	2,913,000	- 913,000
	소계	8,000,000	11,704,200	- 3,704,200
기관 운영비	1.인건비	23,808,000	22,808,390	999,610
	2.직책수당	9,000,000	9,000,000	-
	3.복리후생비	3,000,000	944,030	2,055,970
	4.퇴직적립금	2,380,800	2,380,800	-
	5.여비	3,600,000	651,500	2,948,500
	6.업무추진비	3,000,000	518,150	2,481,850
	7.수용비	3,600,000	818,880	2,781,120
	8.통신비	1,200,000	55,610	1,144,390
	9.사무실관리비	7,200,000	6,562,543	637,457
	10.잡비	3,000,000	720,500	2,279,500
	소계	59,788,800	44,460,403	15,328,397
세출 합계		220,336,800	200,379,733	19,957,067

3

2014학년도 감사 보고

한국초등교장협의회 회칙 제22조 제1항 ~ 제2항에 의거하여,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회계기록 및 업무 추진 전반에 대한 감사 실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함.

I. 감사일시 : 2015년 4월 8일 14:00~18:00

II. 감사장소 : 서울 영등초등학교 교장실

III. 대상기간 : 2014년 3월 1일 ~ 2015년 2월 28일

IV. 감사내용

1.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내용

- 가. 세입·세출 총괄
- 나. 세입 결산 내역
- 다. 세출 결산 내역

2. 업무 추진 전반

V. 감사 결과

1.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감사 결과

가. 세입면

- 1) 정기회비가 예산액보다 8,190,000원 감소함. 회원들에게 회비납부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독려하는 등 보다 세심한 노력이 필요함.
- 2) 보조비와 광고수익 등 전반적으로 수입이 감소함. 시장 경기를 감안 하더라도 집행부가 예산확충을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임.

나. 세출면

- 1) 기관운영비에서 여비, 수용비 및 관리비 등에서 절감한 흔적이 엿보임. 그러나 사무실 임대료 등의 지출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할 것으로 사료됨.
- 2) 사무실 임차 보증금 1,000만원은 법인 자산으로 설정됨.

- 3) 홍보비의 절감은 바람직하다 하겠으나, 한국초등교장협의회의 기능과 역할, 활동 내용을 다양한 방법으로 전국적으로 홍보하여 위상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 업무추진 전반

- 가. 제56회 한국초등교장협의회 동계연수회는 집행부와 인천초등교장회의 긴밀한 협조 체제로 5,000여 회원이 참석하는, 대 성황을 이룬 행사로 교장회의 위상 제고와 교장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성공적인 행사였음.
- 나. 교육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안 발생 시 한국교총, 초중고교장총연합회, 초등여교장회 등 유관기관 및 단체들과 연계하여 긴밀히 협의하고 신속히 대응한 것은 회원들의 권익신장과 한국초등교장협의회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앞으로도 중차대한 사안 발생 시 기민하게 대처해야 함.
- 다. 매년 4월 이사·대의원회는 신학년도 들어 실시하는 첫 행사로 예산 부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이사·대의원회를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 및 예산 절감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
- 라. 지난 몇 년 동안 불성실한 복무태도를 보였던 사무국장을 2015년 2월말일자로 계약해지하였고, 그에 따른 온갖 협박 등 어려움을 잘 해결한 회장단의 노력은 한초협 운영에 크게 기여한 중대한 업적이라 할 것이며, 향후 원활한 사업추진과 예산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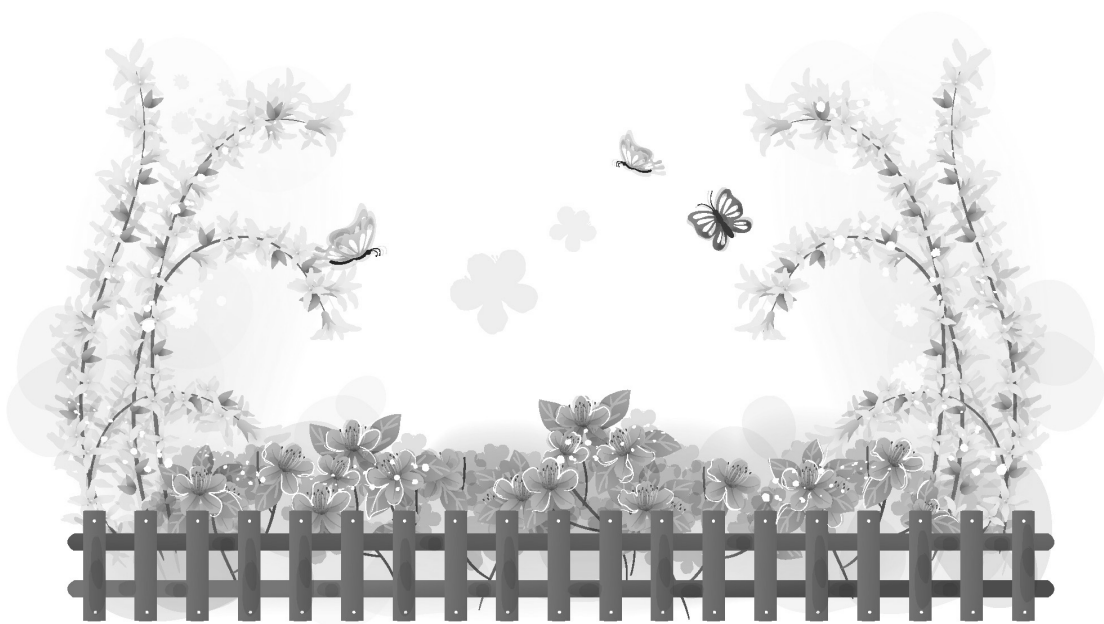
2015. 4. 8

감 사 : 김 수 연



II. 안건협의

- ① 2015학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② 2015학년도 주요 사업 추진 계획(안)
- ③ 제33대 한국초등교장협의회 임원 선출



1 2015학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

가. 2015 예산 총괄표(안)

한국초등교장협의회

구분	과목	예산액	비고
세입	이월금	21,320,000	(원단위절사)
	정기회비	179,220,000	교장, 교장출신 장학관
	보조금	3,000,000	한국초중고교장총연합회
	광고및 기타수입	10,000,000	
	사무실임차보증금	10,000,000	
	합계	223,540,000	
세출	사업비	161,922,000	
	회의비	7,800,000	
	기관운영비	25,168,000	
	준비금	28,650,000	2016. 상반기 이사대의원회
	합계	223,540,000	

나. 2015 세입 예산(안)

한국초등교장협의회

관/항/목		예산액	산출기초	
1.전기이월금		21,320,000	(원단위절사)	
2.정기회비		179,220,000	5,974	x 30,000원
	시도	예산액	회원수	회비기준액
	서울	19,170,000	639	x 30,000원
	부산	9,150,000	305	"
	대구	6,600,000	220	"
	인천	7,260,000	242	"
	광주	4,500,000	150	"
	대전	4,290,000	143	"
	울산	3,570,000	119	"
	경기	35,850,000	1195	"
	강원	10,530,000	351	"
	충북	7,770,000	259	"
	충남	12,150,000	405	"
	전북	12,420,000	414	"
	전남	12,720,000	424	"
	경북	14,340,000	478	"
	경남	14,790,000	493	"
	제주	3,330,000	111	"
	세종	780,000	26	"
3.보조금		3,000,000	한국초중고교장총연합회	
4.광고 및 기타수입		10,000,000		
5.사무실임차보증금		10,000,000	2015 6월말	
합계		223,540,000		

※상기 정기회비 항목의 학교 숫자, 교육부 교육통계 연구센터 2014년도 자료 참조
 매년 9월1일자로 해당년도 자료가 탑재 됨 (<http://cesi.kedi.re.kr/>)

다. 2015 세출 예산(안)

한국초등교장협의회

관	항	목	세목	예산액	산출기초
1.사업비				161,922,000	
	1.하계연수비			65,000,000	
	2.운영비	1.지원비		50,000,000	하계연수 주관 교장회 운영 지원금
		2.연수지발간비	숙식비	1,500,000	본부운영 숙식비
			출장비	500,000	본부운영 출장비
		3.연수지발간비		12,000,000	5,000부x2,400원
	4.예비비			1,000,000	
	2.이사대의원회 비			58,300,000	
	1.숙박비			25,000,000	250명X5만원x2회
	2.식비			20,000,000	250명x4만원x2회
	3.시도지원비			5,000,000	중식비지원(250명x1만원x2회)
	4.운영비		인쇄비	4,000,000	200만원x2회
			강사비	3,200,000	2명x80만원x2회
			출장비	100,000	5만원x2회
	5.잡비			1,000,000	
	3.정책·개발 연구비			1,000,000	25만원x4분과
	4.홍보비			1,700,000	
		1.홈페이지관리비		500,000	50만원x1년
		2.도메인유지비		200,000	20만원x1년
		3.보도활성화비		1,000,000	20만원x5회
	5.시도교장회활동지원비			17,922,000	5,974명x3,000원
	6.초중고교장총연합회비			15,000,000	5,000명x3,000원
	7.유관기관관계유지비			3,000,000	50만원x6회
2. 회의비				7,800,000	
	1.이사회			5,800,000	
		1.회의비		4,200,000	10만원x21명x2회
		2.식비		1,600,000	80만원x2회
	2.임시회의			1,000,000	
		1.출장비		500,000	10만원x5회
		2.식비		500,000	10만원x5회
	3.예비비			1,000,000	

3.기관운영비			25,168,000	
1. 인건비			3,600,000	직원급여보조금(30만원x12회)
2.직책수당			6,000,000	50만원x12회
3.출장비			300,000	1만원x30회
4.수용비			3,548,000	
	1.소모품구입비		1,348,000	
	2.비품구입비		1,000,000	
	3.운송비		500,000	
	4.수선비		700,000	
5.통신비			4,800,000	
	1.전화		1,200,000	10만원x12회
	2.팩스		3,600,000	30만원x12회
6.사무실 관리비			6,920,000	
	1.임대료		4,800,000	40만원x12회
	2.관리비		320,000	8만원x3,4,5,6월
	3.공과금	전기세	1,200,000	10만원x12회
		수도세	600,000	5만원x12회
4.준비금			28,650,000	2016 상반기 이사·대의원회
1.숙박비			12,500,000	250명x5만원
2.식비			10,000,000	250명x4만원
3.시도지원비			2,500,000	중식비지원(250명x1만원)
4.운영비	1.인쇄비		2,000,000	200만원x1회
	2.강사비		1,600,000	2명x80만원
	3.출장비		50,000	5만원x1회
세출합계			223,540,000	

2 2015학년도 주요 사업 추진 계획(안)

날짜(안)	장소	내 용
3.1	사무국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관련 소식지 홍보 협조
3.23	사무국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 참석 협조 요청
4.1	사무국	2015학년도 이사·대의원 명단 제출 공지
4.8	서울 설가온	제1차 이사회
4.9	사무국	제33대 회장 선출 공고
4.20	사무국	2015학년도 연회비 납부 안내
4.29~30	단양 대명리조트	2015 상반기 이사·대의원 총회 개최
4.30	서울시교육청	2014 사)한국초등교장협의회 법인 감사 수감
6월중	사무국	사무국 이전, 홈페이지 개편
6월중	경남 창원	제57회 총회 및 하계연수 준비회의
6.30	사무국	사·도 교장회 활동 지원비 지급
7.30~31	사무국	제57회 총회 및 하계연수회 개최
9월초	미정	제2차 이사회
9월중	사무국	2015 하반기 이사·대의원 명단 변동 사항 제출 공지
11월중	미정	하반기 이사·대의원회 개최 (2015년도 학사 일정 제공)
3월중	사무국	2015학년도 회계 감사
3월중	사무국	2016학년도 상반기 이사·대의원 명단 제출 공지

※ 제57회 한국초등교장협의회 총회 및 하계연수회 운영 계획(안)

- 행사명 : 제57회 한국초등교장협의회 총회 및 하계연수회
- 목 적 : 전국의 초등학교 교장 및 교장출신 전문직의 직무수행과 관련 한 정보교환·연구·연수와 회원 상호간의 협력 및 교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방 침
 1. 전국 회원 상호간의 네트워크 형성 및 정보교환의 장이 되도록 한다.
 2. 교육발전을 위한 지역 유관 기관과 상호 협조 체제를 공고히 한다.
 3. 초등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기회가 되도록 한다.
- 일 시 : 2015년 7월 30일(목)~31일(금) (1박2일간)
- 장 소 : **경남 창원**
- 대 상 : 전 회원 (전국 초등학교장 및 교장출신 교육전문직, 약6천명)
- 주 최 : (사)한국초등교장협의회
- 주 관 : 경남 초등교장회
- 세부계획 : 추후 수립

MEMO

3 제33대 한국초등교장협의회 임원 선출

1. 대상

- 가. 회장 1인 - 2015 상반기 이사회 선출
- 나. 부회장 6인
 - 임명직 1인 - 회장 소속 시·도 부회장(실행부회장) 한상윤
 - 선출직 2인 - 2015 상반기 이사회 선출
 - 당연직 3인 - 한국사립초등교장협의회 회장 최태만
 - 한국초등여교장협의회 회장 김옥자
 - 하계연수 개최 시·도(경남)교장회 회장 고희병
- 다. 이사 20인 이내 - 시·도 교장회 회장(단, 경기도는 2인)
 - ※ 이사 명단 참조
- 라. 감사 2인 - 2015 상반기 이사회 선출

2. 근거

제18조(임원의 종류)

1.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회 장 1인
 - 부회장 6인
 - 이 사 20인 내외
 - 감 사 2인

제19조(회장, 부회장의 선출)

1. 회장은 이사 3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시·도회장으로서 선거 20일전까지 등록한 자를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대의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2. 부회장 6인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 (1) 부회장 1인은 회장 소속 시·도 교장회 부회장으로 한다.
 - (2) 부회장 3인은 회장 소속 시·도를 제외한 시·도 교장회 회장 중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대의원회에서 인준을 받으며, 그 중 1인은 연수회 개최 시·도 회장으로 한다.

(3) 부회장 2인은 전국사립초등학교 교장회 회장과 전국초등학교여자교장회 회장으로 한다.

제20조(감사의 선출) 감사 2인은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대의원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단, 회장 소속 시도에서는 감사를 선출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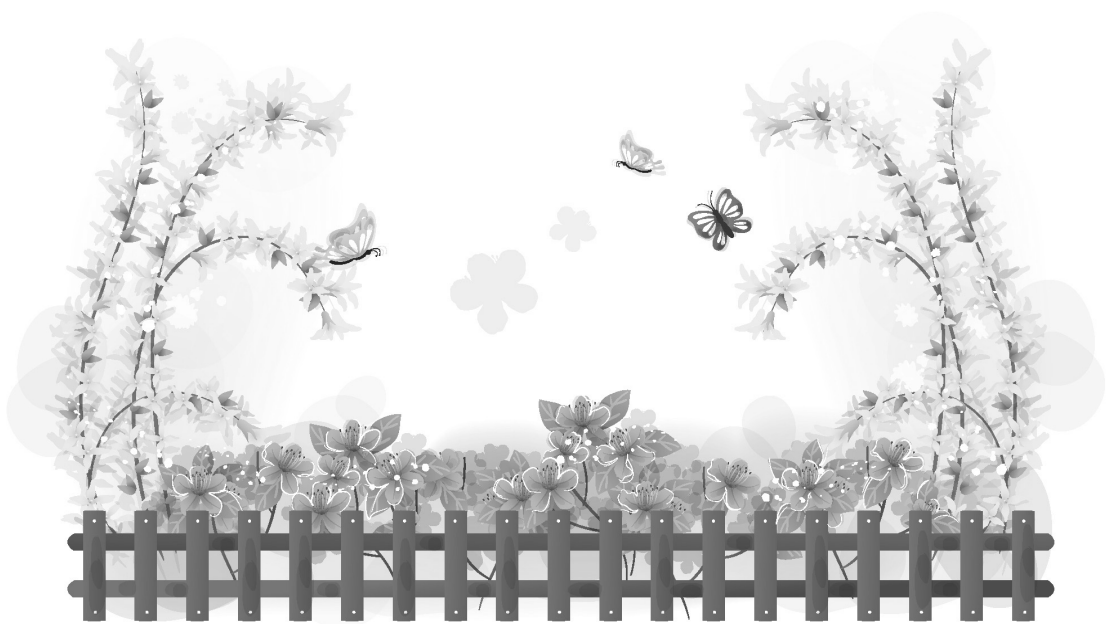
제23조(임원의 임기)

1.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연수회 개최 시도 회장으로서 부회장이 된 경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제19조 및 제20조에 의거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MEMO

Ⅲ. 연수자료

- ① 교육리더가 알아야 할 인사노무관리 상식
 - 노무법인 위맥 대표 함용일
- ② 한국교총 주요 정책활동
 - 한국교총 김종식 사무총장



교육리더가 알아야 할 인사노무관리 상식

- 한국초등교장협의회 상반기 이사회·대의원회 -

2015. 4. 29

WeMAC | 노무법인 위맥
WeMAC Consulting Group
대표 공인노무사 함용일

Contents



1. 시작하며
2. 노동법 일반 원칙
3. 비정규직 관련 노동법
4. 근로계약의 체결과 해지
5. 집단적 노사관계법

노동법의 중요성

🔍 교육리더가 노동법을 알아야 하는 이유

직원들의 권리의식 증대

- ✓ 학교회계직원들의 노동법 지식수준 향상
- ✓ 권리를 보호 받지 못하는 직원은 헌신하지 않는다.

학교는 사회의 모범

- ✓ 학교의 이미지 실추와 명분 상실
- ✓ 법적 제재

분쟁 가능성 증대 및 분쟁에 따른 부담

- ✓ 정당한 대우를 보장받기 위한 행동
- ✓ 분쟁 해결 비용 등 학교 부담
- ✓ 분쟁과 대립에 따른 상호 신뢰 훼손

노무관리의 중요성

- ✓ Risk 관리 : 예방적 노무관리의 중요성
- ✓ 교장 = 노무관리의 주체, 노동법 준수 의무자

교육리더가 알아야 할 인사노무 관리 상식

WeMAC | 노무법인 위맥

공인노무사 함용일 소개(010-3277-68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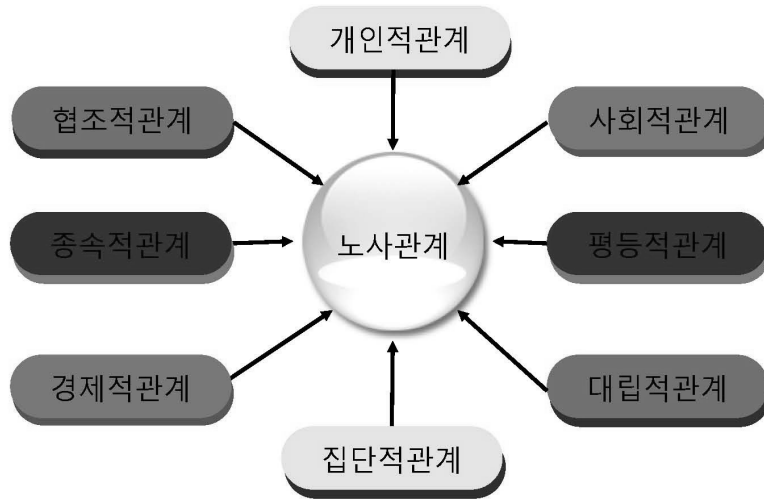
- 학 력
 - 숭실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학과(인사조직전공) 박사과정
 - 영국 카디프대학교 비즈니스스쿨 석사
 - 한국외국어대학교 상경대학 졸업
- 주요 경력
 - 현, 노무법인 위맥 대표 공인노무사
 - 현, 2014인천아시아게임조직위원회 자문 노무사 등 다수 공기업 자문중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위촉 성희롱예방교육 전문강사
 - 전, 국토해양부 산하 인천항만공사 경영지원팀 근무
 - 전, 한국노총 공공연맹 산하 인천항만공사노동조합 위원장
 - 전, 서울특별시 전문직 공무원
- 수상 경력
 - 고용노동부 노사한누리상 수상(공공기관 최초)
 - 국토해양부 장관 표창 수상
- 주요 분야
 - 공공기관 인사노무 자문 및 단체교섭 등 노사관계 컨설팅 및 강의
- 연락처
 - 02-552-7897, yogiham@naver.com

교육리더가 알아야 할 인사노무 관리 상식

WeMAC | 노무법인 위맥

노사관계의 개념 이해

🔍 노사관계의 다양성



교육리더가 알아야 할 인사노무 관리 상식

WeMAC | 노무법인 위맥

노사관계의 개념 이해

🔍 노사관계의 두가지 측면 : 개별 vs 집단



◆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 ◆

근로기준법 · 최저임금법 · 임금채권보장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관계 ◆

분배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참여 : 근로자참여와협력증진에관한법률

- 개별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가장 밀접한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규율하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가장 중요

교육리더가 알아야 할 인사노무 관리 상식

WeMAC | 노무법인 위맥

노동법의 특수성

법 적용의 원칙

일반적인 법원적용 순서 : 상위법 우선의 원칙



기간제법

회계직원 계약관리지침

기타 원칙 : 특별법 우선의 원칙(근로기준법>민법)
신법 우선의 원칙

노동관련 법률의 적용 순서 :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

노동관계법에서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의 법원이 우선 적용
예) 단체협약이 근로기준법이나 회계직원 계약관리 지침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면 단체협약 우선 적용 등

교육리더가 알아야 할 인사노무 관리 상식

WeMAC | 노무법인 위맥

비정규직 근로자의 종류

일반적 비정규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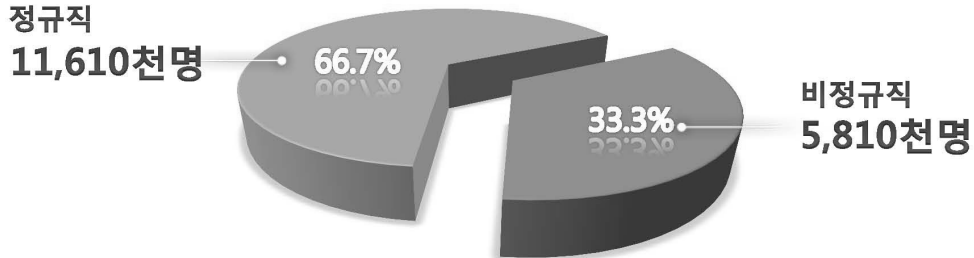


교육리더가 알아야 할 인사노무 관리 상식

WeMAC | 노무법인 위맥

비정규직 고용현황

“우리나라 비정규직 고용현황”



우리나라 노동인구수 현황

2013년 현재 학교회계직원(학교비정규직) : 15만명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2013년 2월

교육리더가 알아야 할 인사노무 관리 상식

WeMAC | 노무법인 위맥

학교회계직원은 근로자

🔍 학교회계직원이란?

각급 학교에서 교육 및 행정업무 등을 지원 또는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근로를 제공하고 학교회계에서 보수를 받는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예) 영양사, 각종 보조원, 조리사, 방과후 강사, 사서 등

🔍 근로자의 정의

-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근로기준법 2조)
-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

교육리더가 알아야 할 인사노무 관리 상식

WeMAC | 노무법인 위맥

학교회계직원은 근로자

학교회계직원에게 적용되는 법률

● 근로기준법

근로자 개인과 사용자와의 관계 및 의무를 규율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학교회계직원이 비정규직일 경우에 적용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학교회계직원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가입할 경우

● 기타 노동관계 법률 일체

실업급여, 산업재해 등 4대보험 관련

교육리더가 알아야 할 인사노무 관리 상식

WeMAC | 노무법인 위맥

기간제 근로자

1. 의의

-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함
- 기간제법 시행 이후 근로계약기간을 정하는 방법은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2. 특정 사업기간 동안의 근로계약
 3.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가능

2. 보호법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강화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적용

3. 사용기간 제한

- 사용자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근로자 사용 가능
(기간제법 제4조1호)
- 계속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의 반복 갱신 가능

교육리더가 알아야 할 인사노무 관리 상식

WeMAC | 노무법인 위맥

기간제 근로자

4 2년 초과시 무기계약 간주

- 예외사유가 없거나 그 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봄(기간제법제4조2호)
- 임금이나 그 밖의 근로조건은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종전의 근로조건이 계속 적용됨

5 사용기간제한의 예외

- 기간제법은 일정한 경우 인력운영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간제한의 예외를 인정하여 2년 이상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기간제법제4조1항)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해 고령자(55세부터)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등
6. 그 밖에 제1호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교육리더가 알아야 할 인사노무 관리 상식

WeMAC 노무법인 위맥

근로계약 체결시 의무사항

🔍 근로계약서의 서면 교부

- 근로계약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계약 내용이 변경될 경우 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교부
-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근로계약시 근로조건 명시 의무(근기법 제17조)

명시사항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 장소와 업무에 관한 사항, 취업규칙 필수적 기재사항, 기숙사 규칙에 정한 사항
서면 명시사항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교육리더가 알아야 할 인사노무 관리 상식

WeMAC 노무법인 위맥

근로계약의 기간

🔍 근로계약의 기간

- 근로계약의 기간은 당사자가 자유롭게 설정 가능
- 단,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시 유의사항

- 일반적 서면명시 사항 +
-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 근로시간 및 휴게에 관한 사항
- 취업장소 및 업무에 관한 사항
-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기단법 제17조)

교육리더가 알아야 할 인사노무 관리 상식

WeMAC | 노무법인 위맥

단시간 근로자

1. 정의

-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함(근로기준법 제2조8호)
- 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일 경우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단시간근로자

2. 보호법률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은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적용됨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강화
- 근로시간 비례 보호의 원칙 :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당해 사업장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근로기준법 제18조)
- 주당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는 유급휴일, 연차휴가, 퇴직금 등 적용 배제

3. 초과근로의 제한

-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함
- 근로자의 동의 얻더라도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금지

교육리더가 알아야 할 인사노무 관리 상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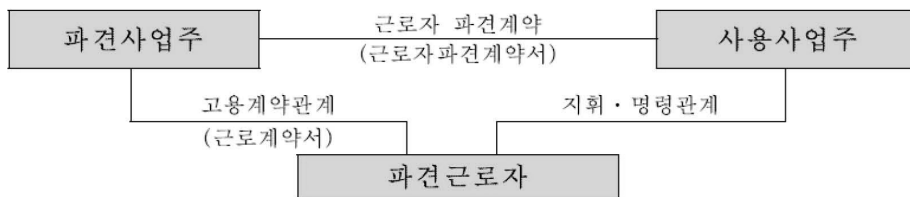
WeMAC | 노무법인 위맥

파견 근로자

1 파견의 법률관계

-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파견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함
-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보다는 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파견 근로자 보호

① 근로자 파견



교육리더가 알아야 할 인사노무 관리 상식

WeMAC | 노무법인 위맥

파견 근로자

2 합법적 파견의 판단 기준

1. 파견사업주 등에 대한 사업주로서의 실체 판단
 - 채용, 해고 결정권, 소요자금의 조달, 법령상 사업주로서의 책임, 기계 설비 등의 자기 책임 부담 등
 - 파견사업주가 사업주로서의 실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사용사업주가 당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추정함
2. 사용사업주 등의 지휘 명령에 대한 판단
 - 작업 배치 변경, 업무 지시 감독권, 휴가 등의 근태 관리, 업무수행 평가권, 근로시간 결정권 등
 - 사용사업주의 지휘 명령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파견근로로 판단

교육리더가 알아야 할 인사노무 관리 상식

WeMAC | 노무법인 위맥

비정규직 차별 금지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전	개정후
<p>• (2조) 3.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p>	<p>• (2조) 3. 차별적 처우라 함은 다음의 각 목의 사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임금 나.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다. 경영성과금 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p>

-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 차별의 대상이 되는 근로조건을 구체화
- 차별적 처우의 판단기준
 - 비정규직과 동종 유사업무 수행 정규직 존재 여부
 - 비정규직과 해당 정규직의 근로조건 차이 존재 여부
 - 합리적 이유 유 'OK', 합리적 이유가 없으면 '차별적 처우'
- 차별적 처우 시정명령 불이행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

교육리더가 알아야 할 인사노무 관리 상식

WeMAC | 노무법인 위맥

근로계약의 종료

종료 사유별 구분

자동소멸	계약기간의 만료, 사업의 완료, 근로자의 사망, 사용자의 파산 등	
퇴직	임의퇴직(사직)	근로자 일방의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
	합의퇴직	근로자와 사용자가 상호 합의하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
	정년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정년에 도달하면 근로관계 종료
해고	통상해고	근로자 측의 불완전한 노무제공에 따른 해고(일신상의 사유)
	징계해고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경영상해고(정리해고)	사용자 측의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해고

교육리더가 알아야 할 인사노무 관리 상식

WeMAC | 노무법인 위맥

해고에 의한 근로계약 종료

해고의 의의

-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 표시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 법률행위
-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우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모든 퇴직사유(대법원, 92다54210)

해고의 제한

- 노동법상 보호대상이 되는 근로계약 종료의 방법
- 근로기준법 등은 다양한 보호장치를 두어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를 제한하고 있음

교육리더가 알아야 할 인사노무 관리 상식

WeMAC | 노무법인 위맥

해고에는 정당한 사유가 필요

정당한 사유없는 해고의 금지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등 그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23조 1항)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
-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유지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거나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을 말함(대법원, 91다17931)

해고의 정당한 사례 예시

1. 노동능력 상실, 경이한 업무 배치 거부, 근로제공의무위반
2. 업무 관련 절도 횡령, 적법한 전근명령에 대한 거부
3. 운수업체 배차지시 거부, 불성실한 업무태도로 인한 실적부진

교육리더가 알아야 할 인사노무 관리 상식

WeMAC | 노무법인 위맥

절대 해고금지 기간

🔍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해고가 금지되는 기간**

1.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2. 산전후 여성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3. 육아휴직기간

- 사용자는 상기에 해당하는 기간 중에는 절대 해고 불가
- 근로자가 취약 상태에 놓여 있어 다음 취업 기회를 얻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해고 방지 목적
- 단, 해고시기 제한의 예외
 - 1)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는 해고 가능
 - 2)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 개시후 2년이 지나도 완치되지 않아 일시보상(평균임금 1,340일분) 한 경우

교육리더가 알아야 할 인사노무 관리 상식

WeMAC | 노무법인 위맥

해고절차

📁 **해고에도 절차가 필요**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근로기준법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규정된 해고 절차가 있을 경우,
- 그 절차를 위반한 해고는 절차상의 흠결로 위법한 해고가 됨
: 징계위원회 구성, 본인 출석 및 소명 기회 부여 등

📁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시키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해고는 무효
- 서면통지는 근로자에게 도달하여야 해고의 효력 발생
: 서면에 기재된 시기보다 늦게 도달하면 도달 시점이 해고시기

교육리더가 알아야 할 인사노무 관리 상식

WeMAC | 노무법인 위맥

해고에는 예고가 필요

해고예고

-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그 해고가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해고일을 명시하여 개별 근로자에게 해고일의 30일전에 예고하여야 함
-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음
-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함
- 해고예고와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임의 선택
- 해고예고를 했는지 여부는 해고의 정당성과 무관

해고예고의 적용 제외

1.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2.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끼친 경우
3. 기타 단기, 임시직 근로자
 - 3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2월 이내의 기간제근로자, 6월 미만 월급근로자
 - 개절업무 6개월 미만 종사자, 수습중(3월 이내)인 근로자

교육리더가 알아야 할 인사노무 관리 상식

WeMAC | 노무법인 위맥

통상 해고

통상해고의 의미

-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근로자의 정신적, 육체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규정된 근로제공 의무를 충분히 이행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해고
- 일신상 사유에 의한 해고

일반적인 통상해고 사유

- 업무상 적성에 흠이 있거나 직무능력이 부족한 경우
- 근로자의 성격상의 사유에서 비롯된 개인적 부적격성
- 계약상의 노무급부를 곤란하게 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
- 비밀유지가 요구되는 근로자가 경쟁기업주와 친인척관계에 있는 경우
- 약물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등
- 경향사업체에서 경향에 적합치 않게 된 경우 등

교육리더가 알아야 할 인사노무 관리 상식

WeMAC | 노무법인 위맥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 정리해고

정리해고의 의의

- 경영상 해고(정리해고)란 사용자 측의 사정에 의한 해고
- 일반적으로 인원이 많고, 근로자들의 반발이 커서 사회문제화 됨
- 근로기준법은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

정리해고의 요건 : 정당성 판단의 4가지 기준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2. 해고회피노력
3.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의 설정
4.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교육리더가 알아야 할 인사노무 관리 상식

WeMAC | 노무법인 위맥

정리해고의 요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 기업이 고도의 경영위기를 회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 강화하기 위한 신기술 도입 등 구조조정 조치에 수반하여 객관적으로 인원삭감이 필요한 경우
- 현재 또는 미래라도 경영악화 방지 목적이 입증되면 필요성 인정
- 경영악화를 피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등은 경영상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의 인정 범위 변화

1. 도산회피설 : 1989년 대법원 판례
2. 합리적 필요설 : 1991년 대법원 판례
3. 감량 경영설 : 2002년 대법원 판례

교육리더가 알아야 할 인사노무 관리 상식

WeMAC | 노무법인 위맥

징계해고

징계의 의미

- 징계한 사용자가 기업질서를 유지하고 경영목적에 부합하는 근로 제공을 받기 위해 기업질서, 문란 불성실 근로와 같은 근로자의 귀책 사유에 대하여 제재를 하고 불이익을 주는 인사 조치
- 징계권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이나
-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 등에서 징계권을 제한
- 징계해고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하거나,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을 이유로 하는 해고

징계(해고)의 정당성 요건

- 징계사유, 징계절차, 징계 양정의 정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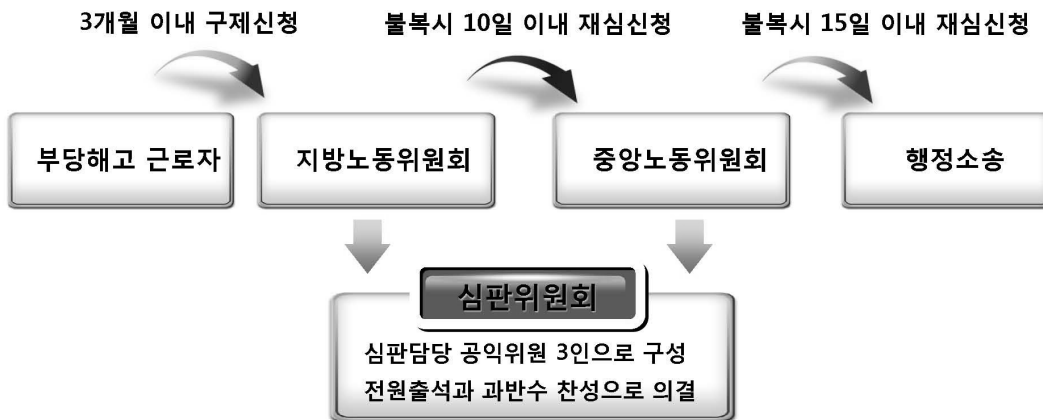
교육리더가 알아야 할 인사노무 관리 상식

WeMAC | 노무법인 위맥

만약 해고가 부당하였다면?

부당해고 구제 절차

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구제



법원에 의한 사법적 구제

해고무효의 소, 근로자 지위 확인의 소

교육리더가 알아야 할 인사노무 관리 상식

WeMAC | 노무법인 위맥

집단적 노사관계 기본 다지기

노동3권의 근거

헌법 제33조

-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 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노조법 제41조 [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 ②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며,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육리더가 알아야 할 인사노무 관리 상식

WeMAC | 노무법인 위맥

집단적 노사관계 기본 다지기

집단적 노사관계 주요 내용



교육리더가 알아야 할 인사노무 관리 상식

WeMAC | 노무법인 위맥

집단적 노사관계 기본 다지기

노동조합의 의의

-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노조법 제2조4호)

- 노동조합의 기능 : 경제적 기능, 공제적 기능, 정치·사회적 기능 자아실현 기능 등

노동조합의 종류

1. 단위 노동조합 vs 연합노동조합
 - 가입대상이 근로자인지 노동조합인지에 따른 구분
2. 기업별 노동조합 vs 산업별 노동조합 vs 지역별 노동조합
 - 가입범위에 따른 구분
 - 지역 및 산업별 노동조합 아래서 기업별 지부, 분회 등 운영

교육리더가 알아야 할 인사노무 관리 상식

WeMAC | 노무법인 위맥
WeMAC Consulting Group

단결권 : 노동조합

노동조합 설립 요건

적극적 요건 : 노동조합 구성 요건

- 주체 : 근로자
- 방법 : 자주적으로 단결
- 목적 : 근로조건 유지 개선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 도모

※ 화물연대는 노동조합인가, 아닌가?

소극적 요건 : 노동조합 자격 상실 요건

1. 사용자 또는 사용자 이익대표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2.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3. 공제, 수양, 복리후생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근로자가 아닌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5.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교육리더가 알아야 할 인사노무 관리 상식

WeMAC | 노무법인 위맥
WeMAC Consulting Group

집단적 노사관계 기본

단체교섭

단체협약

쟁의행위

단체교섭의 개념

단체교섭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와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단결력을 배경으로 교섭하는 것 (노조법 제29조)

단체교섭의 주체

근로자측

사용자측

단체교섭의 주체

노동조합 (O), 근로자 개인 (X)

법인, 개인사업체 대표

단체교섭의 담당자

노동조합의 대표자 및 위임받은자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대표자 및 위임받은자

cf. 단체협약의 주체

노동조합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

교육리더가 알아야 할 인사노무 관리 상식

WeMAC | 노무법인 위맥

집단적 노사관계 기본

단체교섭

단체협약

쟁의행위

단체교섭의 대상

	의무교섭 대상	임의교섭대상	금지교섭대상
단체교섭 거부시	부당노동행위 해당	불해당	불해당
단체교섭 결렬시	쟁의행위 가능	쟁의행위 불가	-
단체교섭 타결시	단체협약 체결(의무적)	단체협약 체결(임의적)	-
노동쟁의 조정	조정대상에 해당	조정대상이 안됨	-
예	임금, 근로시간, 휴일·휴가, 재해보상, 안전보건 등 근로조건에 결정에 관한 사항 1. 근로조건 관련성 2. 사용자가 처분가능성 3. 집단적 성격을 띄는 사안	① 노조전임의 인정 (노사관계법 24조; 대판 1996.2.23,94누9177) ② 쟁의행위 중 임금지급 (노사관계법 44조) ③ 경영권 ④ 해고자 복직 ⑤ 근로시간 중 노조허용	① 전임자 급여지급 (노사관계법 24조) ② 구속자 석방 ③ 특정정당 지지 ④ Closed shop ⑤ 특정종교의 지지

교육리더가 알아야 할 인사노무 관리 상식

WeMAC | 노무법인 위맥

집단적 노사관계 기본 다지기

단체교섭

단체협약

쟁의행위

🔍 단체협약의 의의

단체협약이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가 임금·근로시간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하여 상호 타협 또는 합의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각각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 협정

📌 단체협약의 기능 >

1. 근로조건 형성 기능
 -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통일시키며 유지하는 기능
2. 산업평화 기능
 -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동안 그 단체협약의 개정 폐지 쟁의행위 금지
 - 노사 쌍방에 평화의무 부여

- Q1. 서면작성 하지 아니하거나, 서명날인 하지 아니한 경우의 효력?
 Q2.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효력?

교육리더가 알아야 할 인사노무 관리 상식

WeMAC | 노무법인 위맥

집단적 노사관계 기본

단체교섭

단체협약

쟁의행위

🔍 단체협약의 강행적·직접적 효력

단체협약이 체결되고 나면 이에 위반되는 취업규칙(인사규정, 보수규정 등 일체)는 모두 무효가 되고, 단체협약의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노동조합법 제33조 [기준의 효력] ①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②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교육리더가 알아야 할 인사노무 관리 상식

WeMAC | 노무법인 위맥

집단적 노사관계 기본 다지기

단체교섭

단체협약

쟁의행위

쟁의행위의 개념

● **헌법 제33조 1항** '근로자는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노동쟁의

-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

쟁의행위

-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교육리더가 알아야 할 인사노무 관리 상식

WeMAC | 노무법인 위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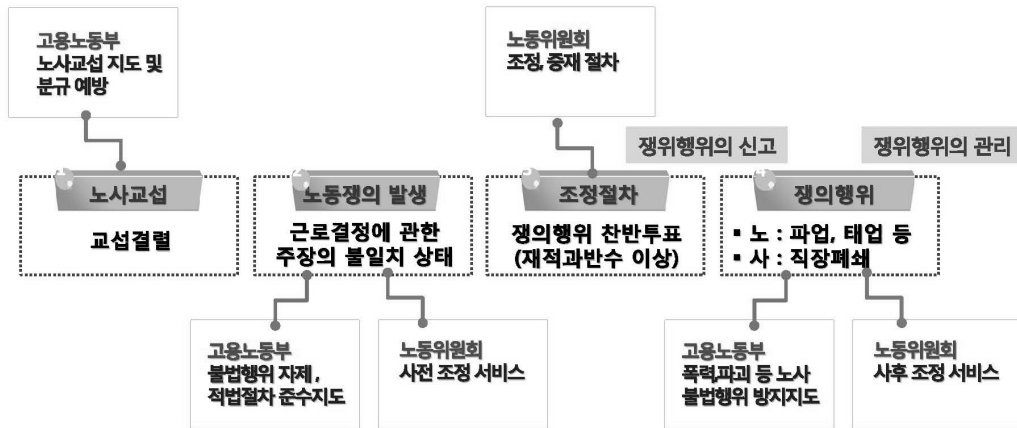
집단적 노사관계 기본 다지기

단체교섭

단체협약

쟁의행위

쟁의행위의 흐름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 주제, 목적, 방법, 절차

쟁의행위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 형사책임, 민사책임(손해배상), 징계책임(징계해고) 등

교육리더가 알아야 할 인사노무 관리 상식

WeMAC | 노무법인 위맥

한국교총 주요 정책활동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종식 사무총장

목 차

1. 교원·공무원연금법 개악 저지 총력 활동
2. '교원 자존심 회복 및 사기진작 과제' 정책 추진
3. 학운위의 비정상적 운영구조 개선 및 권한·책무의 원칙 기반 구축
4. 9시 등교 일률적 추진 문제점 및 교총 입장
5. 교총-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인실련)의 노력 결과, '인성교육진흥법' 제정, 현장기반형 시행령 성안 추진

1 교원공무원연금법 개악 저지 총력 활동

새로운 교총
New KFTA


살아있는 교총
행동하는 교총
연구하는 교총



본격적인 연금 투쟁과 협상은 지금부터입니다!

교총의 연금 투쟁 & 협상 성과와 과제



올바른 교육 훌륭한 선생님

한국교총

교총, 국민대타협기구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 냈습니다!

1 300만원 연금상한 저지 등 교직의 특수성 최대한 관철 ‘새정치민주연합’ 기존 연금상한 도입 입장 자진 철회

- 새정치민주연합에서 300만원 이상 연금 수령 제한 적극 검토(내부 검토안에 포함) 했으나, **교총회장의 강력 문제제기로 철회(3.25)**
 ※ 새정연 연금상한 삭제한 연금개혁 방안 발표(3.25)
- 새누리당 “특정직군에 고통을 더 가하는 연금상한 도입 반대”(2.26)
- 새정연 “교원의 입장 충분히 반영, 도입 생각 없음”(3.5)
- 교원이 피해를 새누리당 및 새정연의 소득재분배 도입 방안 철회 강력 저지 활동 중
 ※ 공투본, 소득비례(소득재분배 반대) 연금 원칙 발표(3.27)

2 국민연금과의 통합, 신규·재직자 분리 등 직업공무원제 말살 기도 강력 저지 정부·여당의 신규·재직 분리 기존 입장 고수 후퇴

- 교총, “신규·재직자를 분리 및 국민연금방식의 도입으로 다중구조화 하는것은 국민연금과의 통합을 염두해 둔 것으로, 강력 저지
- ▶ 공무원연금제도를 무력화하고 직업공무원제도의 특수성을 말살하려 기도로서 철회 강력 촉구
- ▶ 새누리당 추천 김용하 위원, “새누리당의 국민연금 통합 등 구조개혁 방안 포기하고 교총 등이 주장하는 모수(母數)개혁방향” 전격 주장



3 교원의 인사정책 개선 방안 마련 주도

교원·공무원의 인사정책적 개선 방안 별도 지속 논의키로 합의 (국민대타협기구 전체회의, 3.27)

- 인사혁신처의 교원 인사정책 개선에 대한 무성의한 태도 강력 질책
- 안양옥 회장, 대학자녀 학비보조 등 획기적인 개선 방안 결단 지속 촉구
 - ※ 교총회장 - 인사혁신처장 - 현장교원, 인사정책적 개선 방안 간담 개최(3월, 창서초, 반포고 등)
 - ※ 교총, 교육부 대상 교육부문 인사정책 개선 등 시기진작 방안 교섭 중

4 새누리당의 '공적연금 축소, 사적연금 편입' 시도 강력 반대

퇴직수당의 퇴직연금화, 저축계정 신설 등 사적연금 편입 시도 차단 중

- 교원·공무원의 노후를 거대 민간금융사에 맡기는 등 공적연금기능 축소 강력 저지
- 퇴직연금화, 저축계정은 정부의 재정여건에 따라 손쉽게 정책적 변화가 가능한 매우 불안정한 연금 시스템으로 절대 수용 불가

5 기여율(내는 돈), 지급률(받는 돈) 등에 대한 교총 등 공투본 입장 발표(3.27)

'더 내되 현행 소득대체율 유지' 공식 제안

- 교총은 기존의 새누리당의 대폭적인 기여율 인상 및 지급액 삭감 방안에 강력히 대응하고, 적정 소득 보장의 관찰 진력

● 그간의 교총 활동 주요 성과 ●

- ▶ 새누리당 대변 연금학회 주도 연금공청회 저지('14. 9. 22)
- ▶ 새누리당 법안에 대한 학교현장 찬·반투표 및 발표('14. 11월)
- ▶ 새누리당 및 새정연 당사앞 농성('14. 9월 ~ 현재) 및 항의 집회(수시)
- ▶ 2014년 연내입법 저지
- ▶ 국민대타협기구 관철('15. 1. 6) 및 협상주도(1. 8 ~ 3. 28)
- ▶ 300만원 연금상한제 도입 저지
- ▶ 정부의 일방적 연금광고 중단(3. 17) 성과
- ▶ 여·야 주요인사 및 국회의원 릴레이 면담, 국회 안팎 기자회견(10회) 등 지속 전개 중



국민대타협기구 연장선의 ‘실무기구’에서 교총 입장을 반드시 관철시키겠습니다!

1 국민대타협기구의 연장선 ‘실무기구’* 참여의 중요성

‘실무기구’에서의 쟁점사항(기여율, 지급률 등) 최종 합의 가능성

* 실무기구 : 국민대타협기구 마지막 전체회의(3. 27)에서 3시간의 격론 끝에 국민대타협기구 논의를 완결 짓기 위해 구성한 기구

- 국민대타협기구에 참여한 교총의 실무기구 참여를 통한 교직의 특수성 관철 총력활동
- 협상과 투쟁이라는 명분과 실리적인 접근을 통해 교육계 입장 최대한 관철

2 교원·공무원연금법 주요 쟁점에 대한 교총(공투본) 주요 입장

1. 신·구 분리 등 구조개혁 강력 반대

- 신·구 재직자 분리를 통한 국민연금과의 통합기도 저지
 - 신규·재직자간 갈등 야기, 국민연금과의 통합 수순

2. 적정 개인 보험금과 정부 부담금의 비율이 개혁안의 핵심(모수개혁)

- 기여율과 지급률 조정 등 모수개혁을 통한 공무원연금 제도 및 직업공무원제 특수성 유지

3. 신규, 재직자, 수급자 간 고통분담 동참 4. 현행 퇴직수당 체계 유지

- 특정 세대에 연금개혁 고통 전가 불합리
- 퇴직수당의 퇴직 연금화, 저축계정 도입 등 공적연금 축소 및 사적연금화 반대

5. 연금지급개시연령 연장과 정년연장 연동(65세) 등

- 퇴직후 연금소득 단절 해소, 단, 퇴직후 재고용, 임금피크제 등 절대 반대

3 향후, 연금개편 논란 상시 대응을 위한 상시적 대응체제 확립 중요

5년주기 연금개편 논란에 대한 상시적, 전문적 대응 시스템 구축

- 인구고령화로 인한 연금급여가 급격히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5년주기 연금개편 논란 지속 가능성

※ 공무원연금법 제66조(비용부담)에서는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에 드는 비용은 적어도 5년마다 다시 계산하여 재정적 균형이 유지되도록 한다'고 규정

교총공무원연금법 추진단 구성 운영을 통해 2009년, 2015년의 공무원연금법 대응에 대한 제반자료 정리 및 전문가·현장교원 인력풀 구축 등 상시대응 체제 가동

새누리당(전문가 방안 포함)·새정연·교총 등 공투본 방안 비교

구분	현행	새누리당(추천 위원)			새정치 민주연합	교총 등 공투본
		새누리당 (*14. 10. 28)	김태일 (*15. 3. 17)	김용하 (*15. 3. 26)		
신구(新舊) 공무원 분리	X	O	O	X	X	X
기여율 (내는 돈)	7%	신규 4.5% 재직 10%	좌동	10%	미정 (9% 예상)	더 낼 수 있음
지급률 (연금 지급 산식)	1.9%	신규 1.0% 재직 1.25%	신규 1.0% 재직 1.25%	1.65%	미정 (1.7% 예상)	1.9%
퇴직수당	민간 39% 수준	민간 100% 수준 (연금전환)	좌동 + 저축계정 (추가부담)	현행 유지	현행 유지	현행 유지
내고 받는 비율 (재직자)*	-	42% 더내고 34% 삭감	42% 더내고 (저축계정 추가 부담 제외) 34% 삭감	42% 더내고 13% 삭감	28% 더내고 10% 삭감	더내고 현행 유지
월 연금수령액 **	171만원 (가정치) 34% 삭감	113만원+@ (퇴직수당 연금화)	113만원+@@ (퇴직수당 + 저축계정 추가 부담 포함시 150만원)	149만원	153만원	171만원

* '내고 받는 비율'은 향후 미래시점으로 30년후 퇴직을 가정한 수치로 재직기간이 길수록 더 내는 금액과 연금 삭감액은 대폭 줄어듦.

** 월 평균급여 300만원, 30년 재직했을 경우 가정. 새누리당안과 김태일안의 퇴직금 현실화 및 저축계정은 제외된 금액임. 각 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차이를 살펴보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최종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교육직에 대한 개인편익(내는 금액과 받는 금액) 자료를 제공토록 할 계획임.

한국교총과 함께 교육위기를 극복합시다!

한국교총의 절규를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신다면

한국교총과 함께 해주십시오!

한국교총 회원가입

1. 회원가입서는 학교 교총분회장에게 문의해주시십시오

* 지난 3월초 전국 학교 교총분회장에게 일괄 우편 배송

2. 기타 회원가입 문의

한국교총 조직강화국 (T. 02-570-5552~4)

□ 공적연금 개악저지 활동경과

— 교총,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위해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2015. 4. 16 기준

2015. 4. 6~ 안양옥 회장, 국민대타협기구 연장선에 '실무기구' 직접 참여, 교직의 특수성 등 합리적 대안 마련 노력 경주 중



공무원연금 실무기구 회의(4.6~)

2015. 3. 28 교총 등 공투본, 공적연금 개악저지 총력투쟁 결의 대회 개최(여의도 문화마당 교원 등 7만명 참여)

안양옥 회장

“대통령에게 직업공무원제 유지 확약 및 이해당사자와의 면담을 전격 제의한다”



국민연금 강화! 공적연금 개악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3.28)

2015. 3. 27 제5차 국민대타협기구 전체회의, 미진한 사항에 대한 합의 등을 위해 추가적 논의 필요성 공감, 실무협의회 구성 추가 논의 결정



제5차 국민대타협기구 전체회의(3.27)

2015. 3. 17 ~ 3. 26 국민대타협기구, 공무원연금개혁분과 6차 회의 개최, 합의정신 무시한 일방적 회의자료 제시 강한 문제 제기, 인사혁신처가 제시한 공무원의 인사정책적 측면에 대한 부정적 검토에 대해 강력 질책 및 구체적 보상방안 제출 요구



제6~9차 공무원연금개혁분과회의(3.17~3.20)

3.12 국민대타협기구, 공무원연금개혁분과 5차 회의 개최, 새누리당 및 정부 기 초안 토대의 일방적 회의 방식에 문 제 제기 경고 및 회의실 퇴장



제5차 공무원연금개혁분과회의(3.12)

3.12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공무원연 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주최, '공무원연금공단 운영개선 방안' 공청 회 참석, 정부 부당사용 금액 반환 및 국민 호도 과대포장 TV광고 즉각 중단 촉구



공무원연금공단 운영개선 방안 공청회(3.5)

3. 5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공무원연 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주최, '소득대체를 적정수준'에 관한 공청회 참석, 교원의 적정소득대체율 방안 마련 촉구



소득대체를 적정수준에 관한 공청회(3.5)

3. 3 국민대타협기구 공무원연금개혁 분과 위 제3차회의 참석, 교직특수성 필수 반영 강력 요구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평가 공청회(2.26)

2. 26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공무원연 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주최,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 평가' 공청 회 참석, 교원 특수성 무시한 연금개 혁 방향 언급 강력 질타



2. 23 국민대타협기구, 공무원연금개혁분과 2차회의 개최. 교원의 인사정책적 측면 등 사기진작 방안 동시 마련 거듭 강력 요구

제2차 공무원연금개혁분과회의(2.23)

2. 23 국민대타협기구 들러리 운영 우려에 따른 긴급 기자회견 개최(국회). 국민대타협기구에서 공무원연금법과 노후소득보장관련법 동시논의 요구



국민대타협기구 들러리 운영 우려에 따른 긴급 기자회견 개최(2.23)

2. 12 국민대타협기구, 공무원연금개혁분과 1차회의 개최. 연금관련 교원특성 고려한 인사정책 의제 강력 제안, 일반공무원과 분리해 논의키로 확정.



공무원연금개혁분과회의(2,12)

2. 11 교총 등 공투본-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면담.



교총 등 공투본-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면담(2.11)

2. 5 제4차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전체회의 참석

1. 22 제3차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전체회의 개최. 국민대타협기구를 형식기구화 하는 문제에 대해 강력한 문제 제기.

1. 15 제3차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전체회의 개최. 모 위원의 '공무원연금은 특혜다'라는 발언에 대해 "교원과 공무원을 세금탈취자로 몰아가는 것"이라며 강도 높게 질타



제4차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전체회의(2.5)

2014. 12. 29 여야의 국민대타협기구 일방적 야합 규탄 공투본 간부 결의 대회(새누리당-새정연당사 앞)



12. 26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및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 면담

12. 4 교총, 안양옥 회장 등 교육계 및 교총 대표, 문화상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 면담, '공무원 연금 빅딜 절대 없다', 사회적 합의 기구 구성, 교직의 특수성 반영 등 약속

제3차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전체회의 (1.15)

11. 25 교총 안양옥 회장, 유아초등중등-대학·직능조직 퇴임교원 대표 등과 함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면담, 교육계의 목소리 강력 전달



교총 안양옥 회장, 유아초등중등·직능조직 퇴임교원 대표 등과 함께 새누리당 김무성대표 면담(2014. 11. 25)

11. 19 공투본 대표자 및 공동집행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문화상 비대위원장 등 대표단 간담회 및 기자회견 개최(국회)



공투본 대표자 및 공동집행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문화상 비대위원장 등 대표자 간담회 및 기자회견 개최(11. 19)

11. 11 새누리당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100만 공무원 찬반투표 결과 발표 및 총력 투쟁 선언 기자회견(새누리당사 앞)

11. 7 교총 등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새누리당 김무성대표 면담 및 기자회견(국회)



새누리당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100만 공무원 찬반투표 결과 발표 및 총력 투쟁 선언 기자회견(11.11)

11. 1 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100만 교원·공무원 총궐기대회

10. 7 교총 등 공투본, 이군현 새누리당 사무총장 항의 방문, 정부·여당 일방 추진 중단 촉구

9. 23 연금개약 주도 당·정·청 인사 전화 및 FAX 집중 항의

9. 22 연금학회 공무원연금 개약 토론회 저지 및 공무원연금 개약안 반박 기자회견(국회 정론관)

9. 22 교총 등 공투본, 이상민 국회 법사위원장 면담

9. 18 당사자 배제한 공무원연금 개약 밀실논의 규탄 기자회견(청와대 앞)

9. 3 교총 등 공투본,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면담

8. 13 공무원연금 편파 언론보도에 대해 강력 항의(KBS 및 매일경제신문 등)

8. 13~9. 19 교총, '공무원·사학연금 개약저지 긴급동의' 서명운동 전개



연금 개약 저지를 위한 100만 교원·공무원 총궐기대회(11.1)



공무원연금 개약안 반박 기자회견(9.22)

8. 13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 및 새누리당 규탄 기자회견(당사 앞)

5. 29 교총 '공무원연금법 개정 방향 및 대응 탐색 전문가 협의회' 개최

4. 14 교총 '공무원연금법 개정 방향 및 대응 탐색 전문가 협의회' 개최

4. 8 교총, 안행부 '공무원연금제도개선전문위원회' 구성 관련 규탄 성명



공적연금 개약저지를 위한 공투본 새누리당 항의규탄 투쟁(장기능성) 돌입(2014.11.3~)

2 '교원 자존심 회복 및 사기진작 과제' 정책 추진

주요 정책 방향 및 향후 계획

○ 주요 정책 방향

- 대국민 인식 전환 : 정부차원의 공익광고 조성, 재능기부 및 봉사활동의 연수실적 인정 등
- 규제완화·폐지 : 교원평가 대폭 개선, 학교성과급 폐지 등
- 교육감의 과도한 권한 제어 : 교장공모 및 전문직 임용 등 교육감의 정치 편향 인사 제어, 권한과 역할에 대한 법령 재정비 등
-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 협치를 통한 사기양양 : 교원심리 상담전문 치유센터(1교원 1주치의 제도 운영) 설치
- 학부모의 책무성 강화 등 균형 정책 및 수업주권 확보 : 학부모의 학교교육에 대한 권한 및 책무 교육실시 등
- 인성교육 실천강화 : '인성교육진흥위원회'에 인성교육 전문가 참여 및 활성화 지원 등

○ 향후 일정 계획 : 교총-교육부 교섭 타결

※ '14.12~'15.4, 교총-교육부 교섭 실무협의 4차례 진행 상태

□ 필요성

- 교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고착 및 사회공헌을 위한 정책 전무
- 규제성 정책으로 인한 교직정체성 상실
- 학교의 행정집행기관화 전략
- 범부처 차원의 사기진작 종합적 협치 부족
- 교총-인실련 주도 '인성교육진흥법'제정에 따른 학교현장 등 착근 후속대책 마련

□ 주요 정책 과제 - 학교·교원 밀착형 (개선) 과제

<p>< 7대 핵심 과제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원의 3대 원성정책 대폭 개선 및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능력개발평가 대폭 개선 ○ 학교성과급 폐지 ○ 교장공모제 대폭 개선 2. 교직생애 연수총량제 도입 등 교원의 자발적 연수시스템 구축 3. 과도한 교육감 권한 남용 방지 교원인사제도 개선 4. 교원 학습연구일 운영(월 1회) 5. 복수교감 기준 학급수 하향, 보직교사 정원 확대 6. 자율연수휴직제 도입 7. 도서 벽지 등 소규모 학교 교원에 대한 근무유인책 현실화 	
<p>정책 개선 및 규제 혁파 과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아학교 및 부교장 명칭 변경 2. 국공립대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폐지 3. 교육부 내 교육전문직 확대 및 역할 강화 4. 학교폭력 유공교원 승진가산점제 개선 5. 교육부의 학교현장 의견 수렴(현장 교사 중심)을 위한 시스템 제도화 6. 현장교원의 교·사대 교수선발제 실시 및 출강 기회 확대 7. 교원 소송 법률지원시스템 구축 8. 시·도간 교원 전보 확대를 통한 부부교사의 별거 문제 해소 9. 중소도시 소재 교원자녀의 육아돌봄 지원 10. 교육전문직 중심의 학교감사제도 운영 11.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교무행정 보조 인력 추가 배치 12. 등교시간의 국가·사회적 합의 도출 위한 대국민토론회 개최 13. 수업방해 학생 등에 대한 대처 매뉴얼화 14. 교원명예퇴직 예산시스템 개선 15. 전보유예학교 지정·운영 등을 통한 순환근무제 개선 16. 과중해진 교감의 역할·책임에 적합한 처우 개선(직급보조비 인상) 17. 정부 제출 교권보호법 조속 처리
<p>학교·교원 지원 과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원의 성대결절 및 하지정맥류 등 공무상 재해 인정 2. 교원들의 교과협의회 및 동호회 활동 경비 지원 3. 학운위의 비정상적 운영구조 개선 및 권한·책무의 원칙 기반 구축 4. 교원의 각종 문화시설 이용시 '교육문화프리패스' 발급 5. 사립교원의 학교폭력 등 배상책임 개선 6. 전문상담교사 배치 확대 7.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확충 8. 교원 본인 및 자녀 학비 지원

□ 주요 정책 과제 - 대외적 기반 조성 과제

<p>< 5대 핵심 과제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부 차원의 교원 자존심 회복을 위한 공익광고 조성 2. 교원의 국내외 사회봉사 등 공헌활동 참여 연수 활성화 3. 학교-가정의 협치(師母一體)를 위한 학부모 교육 강화 4. 우수교원 해외진출(예비교원 등) 및 교육수출 지원 5. '스승의 날' 전국민 스승 찾기 등 교원 존중풍토 조성 	
<p>인성 교육 실천 강화 과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성교육실천연구회 조직 및 활성화 지원 2. '인성교육부장관'으로 명칭 변경 3. 인성교육 목표와 성취기준 결정시 현장교원 참여 등 의견반영 필수화 4. 예비교사 및 현직교사 대상 인성교육(연수) 강화 5. '스승의 날' 전국민 스승 찾기 등 교원 존중풍토 조성 6. 인성교육실천 사모(師母)일체 연수 실시 7. '인성교육진흥위원회'에 인성교육 현장전문가 참여 등
<p>기타 과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규수업시간 외 활동(방과후학교, 돌봄교실 등)에 대한 지자체 중심 운영 2. 교원심리 상담전문 치유센터 설치 3. 시·군·구 단위 교육공원 건립 및 교육 홍보

3	<h2 style="margin: 0;">권한-책무의 학교운영 기반 구축을 위한 학운위의 비정상적 운영구조 개선</h2>
---	---

주요 정책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장의 학운위 당연직 위원 참여 배제 ○ 학운위 심의결과에 대한 학교장의 재심요구권 및 관할청 회부권 부여

□ 이유

○ **학교장 교무통할권에 따른 권한 존중, 의사결정과정 갈등에 대한 합리적 해결구조 회복 필요**

- 현재 학교장은 학운위 심의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고 운영해야 하는 최고책임자임에도 학운위 위원장으로서의 선출은 원천적으로 배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되면서 위원으로 심의과정에 참여는 강제됨. 또한 학운위 심의 결과는 정당한 사유 하에 서만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조직구성 및 운영의 논리성 전무
- 반면 학운위 위원은 대표성 및 책임의식이 부족함에도, 학운위의 권한은 많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고 있음.

: 학운위는 학부모·지역주민의 참여부족으로 구성이 힘든 등 대표성이 낮고, 구성되더라도 위원 책임의식 및 전문성 부족, 체계적인 의견 수렴과정 미흡으로 갈등 발생

○ **학운위 위원 참여의 사적(私的) 활용에 인한 학교운영에서의 갈등 방지 필요**

- 일부 학부모 위원이나 지역위원들이 사적 목적인 대입특별전형에서의 학생추천, 교원 인사, 급식, 교복, 수학여행 등에 있어서 강력히 개입하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으나, 학운위 심의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은 학교장에게 떠넘기는 형태로 운영됨에 따라 갈등 심화
- 따라서 학운위 심의결과를 존중하되, 심의결과가 학교운영 전반을 고려할 때 타당하지 않을 경우 학운위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현황

○ **안홍준 의원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15. 3. 3)**

- 주요 내용 : 학교장 학교운영위원회 제외, 학교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교감 참여

4 9시 등교 일률적 추진 문제점 및 교총 입장

교 총 입 장

○ **등교시간의 국가사회적 합의 도출 위한 대국민 토론회 개최**

- 학교는 미래의 삶을 준비하는 곳으로 성장하는 시기에는 바람직한 사회적 습관 형성의 중요성 고려 → 학교에서 습득할 수 있는 규율·극기의 가치 재조명
- 5대 시간관련 정책(9월학기제, 9시등교제, 시간선택제교사제, 방학분산제, 자유학기제)이 미치는 사회·경제·개인적 영향력을 고려하여 국민적 합의 전제 필수
- 등교시간과 관련하여 학생·학부모·교원의 찬반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사회적 갈등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현장의 갈등과 혼란 상황 해소

○ **사도별로 추진되는 9시 등교제에 대한 교육부의 적극적 역할 필요**

- 교육부는 학교장 자율권한 혹은 교육감 권고사항이란 미온적 태도로 일관
- 9시 등교제로 인한 교육현장 혼란 및 학생·학부모·교원 간 사회적 갈등 피해 점검, 문제점 해소와 합의 도출을 위한 토론회 개최 등 교육부의 적극적 역할 필요

○ **형식적 자율이 아닌 진정한 학교의 의사결정구조에 의한 자율결정권 보장**

- 인사권 등 강력한 교육감 권한에 의한 사실상 강제적,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되는 9시 등교제에 대한 학교의 지역적 특성에 따른 자율결정권 보장 필요

○ **지방 vs 중앙간 정책적 협력을 통한 교육근본 우선의 정책추진체제 구축**

- 지방교육권한만을 끊임없이 강조하거나 중앙행정부의 지시적 정책추진형태 지양, 협력적 파트너십을 통해 교육본질 우선의 정책추진체제 구축

□ 9시 등교제 추진 문제점

○ **9시 등교제 논란에 따른 이중적 태도 : 학교현장의 반대여론이 높아지자, 대외적으로는 학교장 권한으로 인정하면서 내부적으로 각종형태의 강요사례 발생**

- 9시 등교제와 관련한 논란과 반발이 거세게 제기되자 이재정 교육감은 대외적으로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하여 학교자율사항이라고 말하면서 뒤로 물러서는 형태를 보임.
- 그러나 관내 지역교육지원청차원에서 학교장 대상 간담회, 9시 등교 미실시 예정 학교를 대상으로 하루 3-4차례의 압박 전화, 학생·학부모 대상 설문결과 9시 등교 반대가 높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종용하는 등 온갖 형태의 강제시행 압박

<경기도교육청의 단위학교에 대한 9시 등교 강제 사례>

- 사례 1 : 학교장 대상 협의회시 9시 등교관련 내용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면서 “**교육감님 처음 오셔서 추진하는 정책이니 잘 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한다... 9시 등교는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니까 학부모 대상으로 잘 설득 바란다...시간관계상 질문은 받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등 사실상 학교장에게 9시 등교를 종용
- 사례 2 :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의견을 물어서 시행하겠다고 하자** 교육지원청 담당자가 “**학운위 심의 사항도 아닌데 왜 학운위 의견을 묻고자 하시는가?**”라고 말하면서 시행 강요
- 사례 3 : 학생·학부모 대상 설문결과 **9시 등교 반대가 높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학교장 결정사항이니 따를 필요 없다며 9시 등교제 시행 강행을 종용**

○ 본질적으로 교육법치와 학교자율에 역행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9조에 '수업의 시작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고 학교에 위임했음에도 교육감이 강제하는 것은 법령위배와 학교자율성 침해라는 비판
- 교육자치의 궁극적 지향점은 단위학교책임경영제의 정착으로 중앙교육행정기관인 교육부로부터 점진적으로 자치권한이 이양되는 추세였으나, 교육감선출제도의 변화로 오히려 학교의 실질적 자율결정 권한이 축소되면서 교육감이 교육에 대한 전권을 휘두르는 기형적·역행적 구조 발생
- 결국 중앙정부에서 단위학교로 이양되던 교육자치권의 확대 구조가 가로막히고, 교육감의 개인적 성향에 따라 교육시스템이 좌우되는 형태로 변질됨.

○ 9시 등교제 추진 근거로 내세우는 학생 찬성 100%, 건강권 보장의 근거 부족

- 이재정교육감은 9시 등교제를 강행하면서 학생 100%가 찬성하며,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정책으로 대대적으로 선전하였으나, 이에 대한 근거가 매우 취약함.
- 학생 100%가 찬성한다고 하였으나 한국교총에서 실시한 9시 등교제 관련 설문결과 (경기지역 교원 1,411명)에서 9시 등교제에 대한 학생의 의견을 간접적으로 묻는 문항에서 9시 등교제 찬성 26.8%, 반대 52.6%로 나타남(비슷하다는 20.6%).
- ‘등교시간을 늦추면 아침밥을 먹고 잠을 더 잘 것, 수업에 자는 학생들이 없어질 것’이라고 정책 효과를 제시하고 있으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3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통계’에 따르면 이미 상당수의 학생들이 이미 아침식사를

하고 있으며, 잠이 부족한 이유도 일찍 등교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드라마 시청이나 채팅, 가정학습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음.

- 등교 전 아침식사를 거의 매일 하거나 보통 하는 편인 학생 비율이 75.3%에 달한 반면, 거의하지 않는다(17%). 보통하지 않는다(7.7%).는 비율은 24.7%에 불과함.
- 아침식사를 안 하는 이유는 ‘입맛이 없어서(34.7%)’,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23.1%)’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잠이 부족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드라마, 영화 시청, 음악청취’, ‘채팅, 문자메시지’, ‘가정학습’ 순으로 응답함.

○ 실제 9시 등교제 시행 이후 나타나고 있는 교육적, 현실적 문제점

- 학생들의 피로감 여전
- 하교시간이 늦어짐(여전히 아침을 안 먹는 학생들의 경우 점심시간이 늦어져 배고픔을 더 느낌)
- 아침 스포츠활동 및 다양한 창체활동 축소, 학생 상담시간, 청소시간의 축소
- 학생 생활패턴, 리듬의 변화- 등교시간이 늦어짐에 따른 여유로움이 더 늦게까지 공부하거나 노는 등 교육청에서 주장하는 평균수면시간의 변화나 아침밥을 더 먹는다 는 정책효과성 검증 부족
- 고3, 고1, 2학생, 중학생 순으로 순차적 학교셔틀버스 이용이 불가능해져 교통 불편 야기
- 수업이 늦게 끝나 어둠이 일찍 오는 동계에 학생 안전 문제 대두
- 9시 등교로 인해 일부 학생 등교 전 PC 방 출입 우려
- 맞벌이 부부의 경우 아침밥을 같이 먹고 같이 학교에 데려다 주지 못해, 홀로 집에 있다 밥을 먹지 못하거나 학교에 늦게 가는 사례 발생
- 수능 앞둔 고3 학생들의 생활리듬 변화 - 부정적인 학부모 인식 강화
- 경기도내 새벽반 그룹별 과외 등장 등 사교육 문제 발생

5	교총-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인실련)의 노력 결과, '인성교육진흥법' 제정, 현장기반형 시행령 성안 추진
---	--

인성교육진흥법 통과에 대한 교총의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년 스승의 날 기념식, '인성교육 실천 범국민운동' 전개 선언(5월 15일, 세종문화회관) ○ 300여개 단체·기관이 참여한 '인성교육 실천포럼' 개최(2012. 5. 20) ○ 160여개 인성교육관련 기관, 단체 등과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인실련)' 출범 (2012. 7. 24, 프레스센터) ○ 국회인성교육실천포럼 창립에 적극 협력 ○ 인성교육진흥법안, 국회 조속 처리 촉구 성명서 발표 등 입법 활동 전개, 입법 실현(2014. 12.29) ○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제정 과정상 현장교원 의견 대폭 반영(2015. 1~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제적·집합식 교원연수 규정 완화,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실태조사 전가 및 행정 업무 부담 조항 삭제, 학교에 부과되는 인성수준 등 평가 의무조항 삭제, 중복되는 협의회 설치 관련 조항 삭제, 인성의 척도화 관련 조항 일체 삭제, 학부모의 인성교육 연수관련 지원 추가, 인성교육 기준 및 평가의 자율성 확대 등

□ 법안 발의 주요 내용 및 향후 방향 제안

○ 법안 발의 개요

- 대표발의 : 정의화 의원, 발의자 102인 (의안번호 : 10733(2014.5.26))
- 제3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수정가결('14.12.29)

○ 제정 이유

- 인간의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人性) 여하에 따라 오늘날의 과학기술 및 정보화시대 그 의미와 가치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장기적이고 진정한 경쟁력은 인성에 달려있다고 하겠음.
- 인성교육은 학교를 포함한 사회적 차원에서 종합적·상호 유기적·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국가와 지역사회 차원의 노력과 지원 필요
- 이에 인성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국가·사회적 기반을 구축하고, 인성교육의 틀을 가정·학교·사회가 협력하는 구조로 개편하여 효과적인 인성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

○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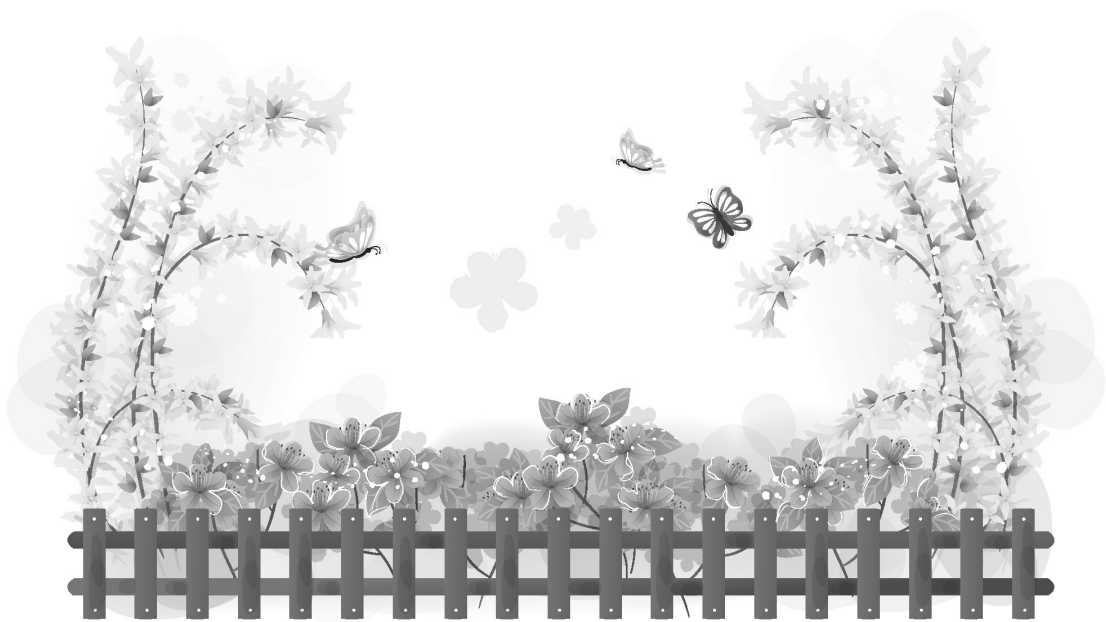
- 교육부장관은 인성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성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성교육진흥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
- 교육부장관은 **학교에 대한 인성교육 목표와 성취 기준을 정하고, 학교의 장은 인성교육의 목표 등을 고려, 매년 인성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해야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성교육 지원,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함.
- 교육감은 **학교의 교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시간 이상 인성교육 관련 연수를 이수하도록 하여야 함**.
- 교육대학·사범대학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교원 양성기관은 예비교원의 인성교육 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과목을 필수로 개설, 운영하여야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국민적 차원에서 인성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이들의 참여의지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언론을 이용하여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인성교육진흥법의 실천력을 담보할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정책 추진의 패러다임을 '집합연수기반, 지시적 정책'에서 '교원의 자발성을 담보하는 정책'으로 전환 유도

- 학교에 적용되는 신규정책의 입안 마인드를 '업무 지시형'에서 '자발성 조성형'으로 전환, 정책 추진의 패러다임 전환
- 특히 인성교육 확산정책은 교원의 마음을 얻어야 성공한다는 전제로 시작하여 정책의 주체를 정부가 아닌 교원에 놓고 세부실천방안 구축
- 현장교원 부담을 최소화하는 조성형 법령의 구성을 위하여 교육부와의 수시협의를 통해 강제적·집합식 교원연수 규정 완화,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실태조사 전가 및 행정업무 부담 조항 삭제, 학교에 부과되는 인성수준 등 평가 의무조항 삭제, 중복되는 협의회 설치 관련 조항 삭제, 인성의 척도화 관련 조항 일체 삭제, 학부모의 인성교육 연수관련 지원 추가, 인성교육 기준 및 평가의 자율성 확대 등 현장의견에 기반한 시행령 제정 추진

IV.첨부자료

- ① 이사·대의원 명단
- ② 정관
- ③ 회칙



이사(회장단, 감사, 시도회장) 명단

2015.4.15현재

한국초등교장협의회

순	직 위	소속	성 명	학 교	교장실
1	명예회장	서울	허순만	서울시교육청	02-3662-2637
2	회 장	서울	박덕수	영동초	02-2633-5861
3	실행부회장	서울	한상윤	교육연구정보원	02-3111-231
4	부회장	여교장회	김옥자	상경초	070-8650-7900
5	부회장	사립초교장회	최태만	홍대부초	02-331-7201
6	부회장	경남	고학병	반송초	055-281-3886
7	부회장	전남	최종오	청계초	061-452-4977
8	부회장	부산	장전초	권해성	070-4346-2000
9	감사	전북	김수연	전주삼천초	063-223-7042
10	이사	광주	김형석	봉선초	062-670-4100
11	이사	대구	정병재	한솔초	053-234-5460
12	이사	대전	장석문	대전목양초	042-257-9574
13	이사	세종	임한국	연양초	044-998-4203
14	이사	울산	박정묵	울산명정초	052-997-4000
15	이사	인천	임강수	인천신송초	032-858-0941
16	이사	강원	이광제	근화초	033-251-0903
17	이사	경기	박상길	부흥초	070-7099-3600
18	이사	경기	이가영	버들개초	031-878-3433
19	이사	경북	김종상	예천동부초	054-652-2045
20	이사	충남	김준표	천안중앙초	041-552-3562
21	이사	충북	박영범	개신초	043-236-0237
22	이사	제주	이수배	오라초	064-743-8060

대의원(시·군·구 회장) 명단

시·도명	순	시군구	근무교	성명	시·도명	순	시군구	근무교	성명	
서울	1	동대문	신답초	고남숙	부산	8	북구	상학초	이신련	
	2	종랑구	원목초	손경재		9	사하구	중현초	이호광	
	3	은평구	신도초	진재신		10	해운대구	반송초	전영의	
	4	서대문구	홍연초	김주석		11	사하구	감정초	안숙이	
	5	마포구	용강초	장남순		12	부산진구	양동초	박정희	
	6	영등포구	영문초	나기영		13	사상구	창진초	홍은숙	
	7	구로구	영일초	조덕현		14	금정구	금성초	남미숙	
	8	금천구	탑동초	정성림		15	기장군	신진초	박금자	
	9	도봉구	가인초	최순주		16	부산진구	연학초	공도열	
	10	노원구	수락초	이해춘		17	해운대구	신도초	김병엽	
	11	종로구	혜화초	박세천		대구	1	중구	명덕초	김명호
	12	중구	흥인초	서효순			2	중구	동덕초	김은희
	13	용산구	용산초	박찬욱			3	동구	동신초	김병태
	14	강동구	강일초	장용선			4	수성구	용지초	신경화
	15	송파구	송전초	이화영			5	서구	두류초	동영훈
	16	강서구	월정초	진만성			6	서구	복현초	이병욱
	17	양천구	강월초	남기열			7	북구	학남초	한중열
	18	강남구	세명초	나용주	8		남구	남명초	함동일	
	19	서초구	우솔초	남미숙	9		달서구	성곡초	송준각	
	20	동작구	신길초	안종복	10		달성군	화동초	배성근	
	21	관악구	봉현초	박상묵	인천	1	연수구	신정초	김성렬	
	22	성동구	행현초	차숙경		2	부평구	부평동초	남산형	
	23	광진구	성자초	박상태		3	중구	공항초	김영렬	
	24	강북구	수유초	최도현		4	남동구	신월초	박영혁	
	25	성북구	미아초	김재환		5	서구	창신초	전봉식	
부산	1	동래구	명동초	백선근		6	부평구	삼산초	신진원	
	2	금정구	장전초	권해성		7	계양구	인혜학교	이병욱	
	3	해운대구	부흥초	김효영		8	남동구	원동초	최희자	
	4	사하구	장림초	이동구		9	강화군	선원초	김문자	
	5	부산진구	가산초	박종현		10	연수구	함박초	김원선	
	6	사상구	덕상초	권수환		11	남동구	만수초	김윤주	
	7	연제구	동명초	김소옥		12	남동구	소래초	김응균	

대의원(시·군·구 회장) 명단

시·도명	순	시군구	근무교	성명	시·도명	순	시군구	근무교	성명
광주	1	북구	삼정초	김숙희	경기	1	가평	상색초	이교섭
	2	서구	만호초	정학수		2	고양	정발초	김명수
	3	북구	서일초	윤완근		3	고양	성석초	황부연
	4	북구	광주운암초	노덕순		4	구리남양주	어람초	김창렬
	5	남구	진월초	정순자		5	구리남양주	판곡초	류호천
	6	동구	광주남초	박민선		6	군포의왕	군포초	김준남
	7	서구	금호초	최판규		7	군포의왕	태을초	이윤선
	8	서구	염주초	김옥명		8	김포	고창초	김배신
	9	남구	진남초	강향자		9	김포	금파초	김계화
	10	북구	태봉초	문두석		10	광명	하일초	이명기
	11	북구	광주동초	심상화		11	광주하남	신평초	최희보
	12	북구	용두초	이상채		12	동두천양주	송내초	박상무
	13	광산구	평동초	김우성		13	동두천양주	탑동초	이정희
	14	광산구	영천초	유상귀		14	부천	중동초	김진복
	15	광산구	월봉초	김정재		15	부천	성주초	이용연
대전	1	대덕구	동도초	박세권		16	성남	하원초	박상수
	2	대덕구	송촌초	이은학		17	성남	당촌초	김성규
	3	서구	금동초	유재열		18	수원	대평초	이건호
	4	유성구	상지초	이인숙		19	수원	상률초	김영종
	5	서구	갑천초	장주숙		20	시흥	군서초	권영섭
	6	동구	용운초	이재균		21	시흥	생금초	전윤경
	7	중구	산성초	이준규		22	안산	송호초	주면식
	8	대덕구	중리초	윤상렬		23	안산	부곡초	박수종
	9	유성구	흥도초	여양구		24	안성	내혜홀초	장성자
	10	유성구	배울초	김계철		25	안양과천	민백초	김봉수
울산	1	동구	녹수초	정종규		26	안양과천	호계초	김복영
	2	중구	삼일초	송인영		27	양평	다문초	최동복
	3	동구	남목초	이성태		28	여주	능서초	신언자
	4	북구	매곡초	김기수		29	연천	궁평초	오범교
	5	울주군	온남초	이삼희		30	용인	왕산초	김만균
	6	울주군	향산초	권재철		31	용인	고기초	최춘매

대의원(시·군·구 회장) 명단

시·도명	순	시군구	근무교	성명	시·도명	순	시군구	근무교	성명	
경기	32	이천	이천매곡초	김상우	충북	6	청주서원구	창신초	조항운	
	33	의정부	솔미초	이기범		7	청주청원구	덕성초	윤진수	
	34	파주	파주와동초	강수원		8	충주시	용산초	김충기	
	35	파주	용미초	정운배		9	제천시	장락초	노진용	
	36	포천	유양초	이광희		10	보은군	동광초	한응석	
	37	평택	덕동초	박영철		11	옥천군	죽향초	변상수	
	38	평택	창신초	석준모		12	영동군	학산초	민화식	
	39	화성오산	화성화수초	김기환		13	진천군	상산초	최석동	
	40	화성오산	안녕초	김성완		14	괴산증평	백봉초	홍순호	
강원	1	춘천시	봉의초	김종화		15	음성군	남신초	장덕수	
	2	춘천시	석사초	최준용		16	단양군	단양초	전병우	
	3	원주시	북원초	김선구		충남	1	천안시	수신초	송토영
	4	강릉시	옥계초	최규영			2	공주시	유구초	서동성
	5	속초양양	청봉초	김형섭			3	보령시	대남초	심재웅
	6	동해시	청운초	전윤택			4	아산시	도고초	류제일
	7	태백시	장성초	박천우			5	서산시	부춘초	구자엽
	8	삼척시	서부초	김장수	6		논산계룡시	가야곡초	최용진	
	9	홍천군	남산초	박홍영	7		당진시	신평초	이범명	
	10	횡성군	횡성초	이헌수	8		금산군	제원초	황인만	
	11	영월군	녹전초	이희영	9		부여군	옥산초	문제명	
	12	평창군	평창초	김회억	10		서천군	비인초	송철강	
	13	정선군	봉양초	변연환	11		청양군	청양초	김경순	
	14	철원군	동송초	김형석	12		홍성군	내포초	김민영	
	15	화천군	화천초	송병수	13		예산군	삽교초	신흥철	
	16	양구군	비봉초	박춘택	14		태안군	모항초	김낙인	
	17	인제군	기린초	정세덕	전북	1	전주시	용소초	김칠수	
	18	고성군	아야진초	김춘만		2	군산시	서해초	홍석기	
충북	1	청주시	모충초	김홍재		3	김제시	성덕초	구희찬	
	2	청주시	한벌초	김심경		4	무주군	무풍초	박성구	
	3	청주시	혜원학교	김영미		5	부안군	변산초	박동석	
	4	청주상당구	금천초	김철영		6	남원시	남원중앙초	김용준	
	5	청주흥덕구	직지초	김서호		7	완주군	남관초	추종남	

대의원(시·군·구 회장) 명단

시·도명	순	시군구	근무교	성명	시·도명	순	시군구	근무교	성명	
전북	8	익산시	어양초	정만일	경북	3	예천군	예천초	김영한	
	9	정읍시	보성초	박영선		4	영주시	부석초	김우영	
	10	순창군	팔덕초	설기환		5	청송군	도평초	이응관	
	11	고창군	고창남초	김상선	경남	1	창원	온천초	정철민	
	12	진안군	진안초	이상석		2	마산	호계초	김재건	
	13	장수군	산서초	김진구		3	진해	도천초	박건춘	
	14	임실군	임실초	한상기		4	진주시	도동초	김병선	
전남	1	목포	목포임성초	고승중		5	통영시	죽림초	배한권	
	2	목포	목포석현초	박종섭		6	사천시	문선초	박복영	
	3	여수	여수구봉	정유식		7	김해시	수남초	김동만	
	4	순천	순천성남초	문승호		8	밀양시	상동초	이태우	
	5	나주	공산초	서금만		9	거제시	중곡초	이종향	
	6	광양	광양북초	황정환		10	양산시	석산초	정삼현	
	7	담양	수북초	이상찬		11	의령군	지정초	장종환	
	8	곡성	곡성죽곡초	박인천		12	함안군	군북초	조원래	
	9	구례	청천초	장계진		13	창녕군	명덕초	구자일	
	10	고흥	동강초	김일배		14	고성군	삼산초	노선규	
	11	보성	노동초	남승현		15	남해군	성명초	한용희	
	12	화순	도곡중앙초	류재관		16	하동군	고전초	박정희	
	13	장흥	용산초	이응규		17	산청군	단계초	조기술	
	14	강진	병영초	이덕기		18	함양군	병곡초	여춘호	
	15	해남	우수영초	조승원		19	거창군	가조초	염석일	
	16	영암	용당초	김영례		20	합천군	합천초	주영완	
	17	무안	오룡초	송재옥	제주	1	제주시갑	광양초	양인자	
	18	함평	나산초	박종식		2	제주시을	하귀초	양태홍	
	19	영광	군남초	조성필		3	서귀포시	신례초	안재근	
	20	장성	사창초	장명희	세종	1	세종시	수왕초	위영란	
	21	완도	청산초	안승민		총 249명				
	22	진도	의신초	석종안						
	23	신안	팔금초	문원길						
경북	1	포항시	양학초	권기복						
	2	문경시	호서남초	장병철						

사단법인 한국초등교장협의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초등교장협의회라 한다. 약칭은 ‘한초협’이라 하며, 영문 명칭은 Korea Elementary School Principal’s Association 이라 하고 영문 약칭은 ‘KESPA’라 한다.

제2조(목적) 이 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전국의 초등학교 교장, 교장출신 전문직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정보교환, 연구, 연수와 회원 간의 상호협력 및 교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 ①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시에 둔다.

제2장 사 업

제4조(사업)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회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정보 교환
2. 회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 및 연수
3. 교육발전을 위한 제안을 관계기관과 협의·건의하는 일

제3장 회원 및 조직

제5조(회원) 이 법인의 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대한민국의 국·공·사립 초등학교 교장 또는 교장경력을 가진 교육전문직으로서 직능별, 지역별 교장협의회에서 추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이 법인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의결권
2. 선거권과 피선거권
3. 이 법인의 사업, 연구, 연수회에 참가할 권리
4. 이 법인에 대하여 건의할 권리
5. 이 법인이 수집, 관리하는 자료를 이용할 권리
6. 기타 권익을 옹호 받을 권리

제7조(회원의 의무) 이 법인의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회비를 납부할 의무
2. 이 회의 정관 및 각종 규정을 준수할 의무
3. 이 회의 의결된 사항을 준수할 의무

제8조(회원의 탈퇴) 이 법인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제명) 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이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가 의결로써 이사장이 제명할 수 있다.

제10조(조직기구) 이 법인의 조직기구는 다음과 같다.

- ① 의결기구 : 총회
- ② 집행기구 : 이사회
- ③ 사무국

제4장 총회

제11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이 법인의 최고 의결 기관으로서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이사 및 감사의 인준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6.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7. 기타 이사회에 위임하지 않은 사항

제12조(총회의 소집)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1회,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수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이사장은 회의안건을 7일전에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 회원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13조(총회의 의결정족수)

-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총회 소집의 특례)

-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3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15조(총회 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회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16조(회원의 의안 제출) 회원이 총회에 의안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10명 이상이 목적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 10일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개정의안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20명 이상이 개정이유를 명시하여 회의 개최 20일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이 사 회

제17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정관개정의안 발의에 관한 사항
7. 기타 중요한 사항

제18조(이사회의 회의)

-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목적을 명시하여 요구할 때에는 이사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 ③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의결정족수)

- ①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최하지 못한다.
- ② 이사회 의안은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의결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1조(이사회소집의 특례)

-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3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6장 임 원

제22조(임원의 종류)

- ①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7명
 2. 감사 2명
- ②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제23조(임원의 선임방법)

- ① 이사는 한국초등교장협의회 임원·한국초등여교장협의회 임원·한국사립초등교장협의회 임원·16개 각 시도별 초등교장협의회 대표 중 7명이 총회의 인준을 거쳐 취임한다.
- ② 감사는 이사장이 임명하며 총회의 인준을 거쳐 취임한다.
- ③ 임기 만료 전 임원의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한다.
- ④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충원하여야 한다.
- ⑤ 이사의 해임은 당연직 대표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으로 하되, 차기 대표가 이사로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집행한다.

제24조(대표권의 제한) 이사장 또는 이사의 이익과 본회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장 또는 당해 이사는 본회를 대표하지 못한다.

제25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후임 이사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26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7조(이사장의 직무대행)

- ① 임원은 그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집행한다.
-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 중 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8조(이사의 자격 상실) 이사는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을 한 때
2. 학교 급을 달리한 학교로 전보·전직하였을 때
3. 법률에 의하여 교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
4. 법에 의해 구속이 집행되었을 때
5. 법률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제29조(고문)

- ① 이 법인은 고문 약간 명을 위촉할 수 있다.
- ② 이 법인의 고문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한다.

제30조(감사)

- ① 감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 및 회장단회의, 총회, 사무국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비(不備)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및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 및 사무국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31조(임원의 임기)

- 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지역별, 직능별 당연직 대표의 임원의 임기는 당연직 임기 내에서 하며 당연직 임기가 종료되었을 시 후임자가 임원의 임기를 연계하여 수행한다.
- ② 임원이 궐위 또는 결원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선출하고, 이렇게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장 사 무 국

제32조(사무국)

- ① 이 법인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의 사무총장과 직원은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8장 재 무

제33조(재정) 이 법인의 재정은 회비, 보조금, 기부금과 기타 사업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34조(회비)

① 회비책정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35조(재산의 관리)

- ① 제35조 제4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 ③ 기본재산 및 운영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2 (현재의 기본재산목록)를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36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제37조(회계의 구분)

-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38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39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0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1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42조(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이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3. 당해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제9장 보 칙

제43조(정관변경)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변경사유서 1부
2. 정관개정안(신·구대조표를 포함한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록 등 관련서류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제44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하며,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 내에 해산 등기를 하고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감독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5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서울특별시교육청에 귀속된다.

제46조(시행세칙) 회비징수에 관한 사항 등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49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 위	성명	주소	직업	임기
이사장	심**	기재 생략	서울**초 교장	2년
이사	문**	기재 생략	서울**초 교장	2년
이사	문**	기재 생략	광주**초 교장	2년
이사	강**	기재 생략	창원**초 교장	2년
이사	박**	기재 생략	서울**초 교장	2년
이사	이**	기재 생략	서울**초 교장	2년
이사	이**	기재 생략	포항**초 교장	2년
감사	장**	기재 생략	부산**초 교장	2년
감사	신**	기재 생략	강릉**초 교장	2년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 2012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사단법인 한국초등교장협의회 회칙

1956. 08. 11. 제 정
2014. 12. 02. 24차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한국초등교장협의회라 한다. 약칭은 ‘한초협’이라 하며, 영문 명칭은 Korea Elementary School Principal's Association 이라 하고 영문 약칭은 ‘KESPA’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학생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조정하며 교육 발전을 위한 연구·연수를 통하여 학생 교육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학교장의 역할 수행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 한국 초등교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치) 본회의 사무소는 본회의 업무를 보기에 편리한 곳에 두되, 회장이 결정한다.

제 2 장 사 업

제4조(사업) 본회는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학생교육에 관한 중요사항 협의·조정
2. 교육발전을 위한 연구·연수 및 세미나 개최
3. 학교 경영우수사례 및 교육발전 방안의 일반화를 위한 회지, 회보 발간·보급
4. 교육 복지·후생 및 권익 증진
5. 국내외 교육연구 및 학교운영 관찰 비교, 연구
6. 타 교육관련 단체와의 교류
7. 기타 본회 목적을 위한 사업

제 3 장 조직 및 회원

제5조(조직) 본회는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 교장회와 시, 군, 구 교장회로 조직한다.

제6조(회원) 본회 회원은 다음 자격을 가진 시도 교장회 회원으로 구성한다.

1. 초등학교장
2. 교장출신 : 장학관, 장학사, 연구관, 연구사

제7조(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의결권
2. 선거권과 피선거권
3. 본회의 사업에 참여할 권리
4. 본회에 대하여 건의할 권리

제8조(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회비를 납부할 의무
2. 본회의 회칙을 준수할 의무
3. 본회의 의결된 사항을 준수할 의무

제4장 기 관

제9조(대의원회)

1. 본회는 의결기관으로서 대의원회를 둔다.
2. 대의원회는 각 시·군·구 교장회 회장을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10조(대의원회의 기능) 대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 선출의 승인
2.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기타 중요 사항

제11조(대의원회의 회의) 대의원회는 다음에 의거하여 소집한다.

1. 정기 대의원회는 매년 2회(4월, 11월 중) 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2. 임시 대의원회는 이사 3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20인 이상이 그 목적을 명시하여 대의원회의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회장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3. 대의원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한다.
4. 대의원회의 의사는 이 회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대의원회의 의안 제출) 대의원이 대의원회에 의안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5인 이상이 목적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 10일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칙개정의 안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25인 이상이 개정 이유를 명시하여 회의 개최 2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대의원의 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임기 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보선하고 보선에 의한 취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이사회)

1. 본회는 심의집행기관으로서 이사회를 둔다.
2. 이사는 회장, 부회장, 각 시도 회장으로 한다.(단, 경기도는 이사2명)

제15조(이사회 기능)

1.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2. 사업집행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4. 예산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5. 대의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회칙 개정안의 작성에 관한 사항
7. 본 회칙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기타 중요 사항

제16조(이사회 회의)

1.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이사 3분의 1이상이 목적을 명시하여 요구할 때에는 회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2.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칙 개정안을 발의하고자 하는 때에는 출석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제17조(전문위원회)

1. 본회는 각 부문의 전문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 ① 교육·정책 위원회
 - ② 연구·연수 위원회
 - ③ 교권·교섭 위원회
 - ④ 홍보·출판 위원회
2.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회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회장이 위촉한 기간으로 한다.
3. 전문위원회는 회장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4. 전문위원회는 이사회가 의뢰한 업무를 협의·연구하고 해결방안을 제출 한다.
5. 회장은 필요시 전문위원회 위원장을 각종 회의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5장 임 원

제18조(임원의 종류)

1.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 장1인
부회장6인
이 사20인 내외
감 사2인
2. 회장에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3. 직전 회장은 명예회장으로 추대한다.

제19조(회장, 부회장의 선출)

1. 회장은 이사 3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시·도회장으로서 선거 20일전까지 등록한자를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대의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2. 부회장 6인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 (1) 부회장 1인은 회장 소속 시·도 교장회 부회장으로 한다.
 - (2) 부회장 3인은 회장 소속 시·도를 제외한 시·도 교장회 회장 중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대의원회에서 인준을 받으며 그 중 1인 은 연수회 개최 시·도 회장으로 한다.
 - (3) 부회장 2인은 전국 사립 초등학교 교장회 회장과 전국 초등학교 여자교장회장으로 한다.

제20조(감사의 선출) 감사 2인은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대의원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단, 회장 소속 시·도에서는 감사를 선출할 수 없다.

제21조(회장, 부회장의 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하고 대의원회, 이사회, 연수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단, 회장은 회장선출시 중립을 지킨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감사의 임무) 감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년 1회 이상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대의원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대의원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3조(임원의 임기)

1.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연수회 개최 시도 회장으로서 부회장이 된 경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제19조 및 제20조에 의거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장 연수회

제24조(연수회) 본회의 목적달성과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연수회를 개최한다.

제 7장 사무국**제25조(사무국)**

1.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2.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사무국장과 직원은 회장이 추천한 자를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3. 사무국장과 직원의 보수는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 8장 재무**제26조(재무)**

1. 회원의 회비
2. 찬조금
3. 보조금
4. 기타 수입금

제27조(회비)

1. 회원은 소정의 년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회비의 액수, 징수방법 및 기간 등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3. 각 시도 교장회는 소정의 회비를 징수하여 일정액을 본회에 납부한다.

제28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학년도로 한다.

제 9장 교장회

제29조(교장회) 본회의 기간조직으로 각 시·도에 교장회와 시, 군, 구에 교장회를 설치 운영 한다.

제30조(회원수 보고 및 회비납부)

각 시도 교장회는 매년 본회에 회원수를 보고하고 이에 따른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1조(회칙준용) 시도 교장회 및 시, 군, 구 교장회의 회칙은 본 회칙에 준한다.

제 10장 해 산

제32조(해산)

1.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본회를 해산한 때의 잔여 재산은 대의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단체에 기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14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24차 개정).

제2조(경과조치) 본 회칙 시행 당시 임원의 임기는 회칙 개정 전기간을 통산한다.

(사) 한국초등교장협의회 사무국

주 소 : 서울 강서구 양천로713 대영빌딩 702호

전 화 : 02)433-9328

팩 스 : 02)496-9087

홈페이지 : kespa.or.kr

메 일 : kespa5974@naver.com

